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연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이동규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법적지위	4
제1절 피해자의 개념	4
1. 피해자의 정의	4
2. 피해자보호의 정당성과 한계	7
제2절 피해자의 법적지위	9
1. 피해자 보호방법에 따른 구분	9
2. 형사절차 진행에 따른 구분	12
제3장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15
제1절 미국	15
1. 연혁 및 관련법률	15
2. 관련기관 및 지원내용	19
3.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LA경찰국: LAPD)	21
4. 뉴욕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23
5.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23

제2절 독일	28
1. 연혁 및 관련법률	28
2. 소송절차내 범죄피해자의 지위	31
3.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36
4.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49
제3절 프랑스	53
1. 연혁 및 관련법률	53
2.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55
3.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58
제4절 일본	59
1. 연혁 및 관련법률	59
2. 경찰의 분야별 피해자 대책	63
3. 경찰의 구체적 피해자 보호 사례	68
4.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의 역할 증대	70
제4장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국적 발전방향	71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71
제2절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72
1. 입법상황	72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77
제3절 일반적 피해자대책의 발전방향	84

1. 적극적 지위보장 방안 - 능동적 정보·참여권	86
2. 소극적 지위보장 방안 - 수동적 보호조치	89
제4절 한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와 발전방향	90
1.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91
2. 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방지	92
3.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93
제5장 결 론	94
[참 고 문 헌]	9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년 가까이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입게 되는 제2차 피해의 방지에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로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 인격권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은 이미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고,¹⁾ 이러한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비롯한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권리보호 등만이 형사사법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과 그로인한 억압적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들의 잠재된 요구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탈권위화 경향에 맞추어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경향은 이러한 논의를 지속케 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은 사법기관에 대하여 이것을 또

1)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한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피해자는 사법기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무기력감, 답답함 등이 조직화되지 못하여 크게 부각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사법기관 내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조직화 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형사절차 특히, 범죄의 현장에서 피해자와 제1차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경찰의 경우 경찰의 수사절차 진행이 결국 피해자에 대한 사법서비스일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을 간과해 왔다. 피해자의 아픔과 슬픔, 그들의 모든 고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도하고 그 실상을 누구보다 생생히 경험하게 되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함은 형사절차의 시간적 흐름으로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사건 처리의 제1차적 책무를 지고 범죄발생 후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경찰의 사건처리 절차에 피해자가 개입하는 것이 사건 담당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권리는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 또는 재판청구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서 경찰 기타의 형사사법기관이 종래 가지고 있던 권한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찰이 1980년대 이래 일본 피해자학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국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이제는 우리나라 형사절차 내에서 가장 적합한 피해자보호 모델을 찾아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의 입법례, 일반적 피해자보호 사례 그리고, 경찰의 피해자 대책을

분석하는 것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 권리의 부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종래 형사절차내에서 누렸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역시 국제적 수준의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역시 계속 신장되어야 하고, 이들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추진해야 할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 일반적 피해자 보호대책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분석한 다음,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경찰이 수행해야 할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특히, 독일의 입법례에 대해서는 원문분석을 통해 1987년 범죄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 이래 2004년의 피해자권리개혁법(Opferrechtsreformgesetz)에 이르기까지 그 입법경과를 상술하고자 한다. 둘째, 사법개혁위원회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연구자료, 각종 법령자료집, 문헌, 경찰청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형사사법 전반에서 요구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관점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한다. 셋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세미나 참가 등을 통해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법적지위

제1절 피해자의 개념

1. 피해자의 정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다. 피해자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Hans von Hentig는 범죄자-피해자간 역학관계(criminal-victim dyad)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유형을 13가지로 분류 하였던 바, 그 유형들로서 ① 아동, ② 여성, ③ 노인, ④ 정신질환자, ⑤ 이민자, ⑥ 소수민족, ⑦ 지능이 떨어진 자, ⑧ 심리적 우울 상태에 있는 자(the depressed), ⑨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가(the acquisitive) ⑩ 성생활이 난잡한 자(the wanton) ⑪ 상심한 자(the lonesome and the heartbroken), ⑫ 늘상 남을 괴롭히는 자(tormentor), ⑬ 따돌림을 당하기 쉬운 자(the blocked or exempted) 등을 제시하였다.²⁾

한편, 피해자학을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Mendelsohn

2) William G. Doerner, *Victimology*, Anderson Publishing Co. 2002. p.5.(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11. 재인용)

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는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는 피해의 원인에 따라 피해자를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 ②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③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피해자, ④ 현대문명의 기술적 요인에 의한 피해자, ⑤ 자연환경에 의한 피해자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피해자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의 경우는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③, ④와 같은 경우는 사회환경의 개선 및 현대문명의 기술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⑤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 비난의 정도를 기준으로 6가지 유형의 피해자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 ② 비난의 여지가 매우 적은 피해자, ③ 범법자와 같은 정도로 법적 비난을 받아야 할 피해자, ④ 범법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처럼 범법자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피해자, ⑤ 주인의 정당방위에 의해 피해를 당한 강도와 같이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할 피해자, ⑥ 가공의 피해자(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입었다고 상상하는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 것이 그것이다.³⁾

위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만은 아니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보호의 개선방향을 논함에 있어 실천적 대안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로 피해의 개념을 한정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개념도 어느 정도 그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3) 앞의 글, p.12.

이 글에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유발행위가 독립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피해자보호의 대상인 피해자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반면에 외견상 피해자로 보인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상대방처럼 범행을 촉발시켰고 그 촉발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경찰의 피해자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 피해자도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은 간접적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할 수 있어서 그들에 대한 보호활동 역시 필요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중요한 증거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력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를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의 범주를 넓게 보고 있다.

미국 법령의 경우도 역시 피해자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피해자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와 법인이나 법인의 대표 그리고 직접적 피해자가 18세 이하에 해당하거나, 행위무능력자 이거나, 자격상실을 당한 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 직접적 피해자의 배우자, 후견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족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외견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면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자 증거수집활

동의 조력자로 보아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되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면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간접적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하겠다.⁴⁾

2. 피해자보호의 정당성과 한계

가. 형사사법상의 정의실현

국가형벌권에 대응하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또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이념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범죄 피해자, 증인 등은 범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받았거나 불이익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형사사법의 실현에 협조하는 자라는 점에서 권리보다 의무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즉, 방어권의 보장 및 그 확대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결국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 불법과 불의가 개입되는 때에는 형사사법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⁵⁾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권위주의적인 사법운영과 무관심에 의하여 과생되는 침해는 이러한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 수사 및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어 온 범죄피해자, 증인 등에게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도 정의는 구현되어야 한다. 정의의 영역에서는 그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과 그들이 가지는 권리 전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⁶⁾

4) 앞의 글, p.16.

5) Werner beulke, Strafprozessrecht, C.F.Müller, 2005. § 1 Rdnr.2.

6)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39.

나. 기본권의 보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국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타당하며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법이론 및 형사법 체계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행형법은 각각 범죄인, 피의자/피고인, 수형자의 마그나카르타로 불려왔다. 반면에 범죄피해자, 신고인, 고소/고발인, 목격자, 증인 등은 형사사법상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 국가는 출석, 신고, 진술, 증언 등의 과정에서 이들이 범죄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파생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여 왔다. 더구나 이제는 범죄인 측으로부터의 보복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가운데 피의자, 피고인에 국한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당연히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되고 구체화 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도 헌법의 기본권 보장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⁷⁾ 국가기관의 형사절차 운용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범죄인에 의한 보복범죄와 같은 자의와 무법상태가 있다면 이는 법의 수호를 위하여 소명된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국가는 형사소추권과 형사재판권, 형사처벌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할 책무 또한 존재한다.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이란 그냥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법질서를 준수하고 국가사법기관의 법률집행에 조력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역할을 소홀함이 없이 수

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⁸⁾

제2절 피해자의 법적지위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들은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그들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지위를 확보케 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는 법적인 측면의 피해자보호대책이 곧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법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1. 피해자 보호방법에 따른 구분

가. 소극적·방어적 지위

피해자의 소극적·방어적 지위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관여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바, 그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기는 지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형사절차에 편입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인격권·행복추구권·자유권 등과 같은 인권 및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소극적 지위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8) 헌재 97.1.16. 90헌마110·136(병합)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가 선량한 시민을 범익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각종 범익침해의 유형을 범죄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실정법화하여 규율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실성 있는 형사법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가 모든 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인격주체’임을 전제로 인간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피해자의 인격권을 비롯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 후단을 근거로 국가가 형사법상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소극적·방어적 의미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보다 충실히 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⁹⁾

나. 적극적 · 공격적 지위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라 함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곧 ‘절차형성력’을 갖는 지위를 말한다. 이는 피해자가 소추의 의사를 가지고 형사절차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형사절차의 목적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발생하는 충돌이나 갈등을 조정·화해·중재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절차참여가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9)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30.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소극적 지위개념에 의하더라도 헌법상 인권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적실성 있는 실체법상의 규정들을 만들어야 하는 바,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한층 더 밀도 있는 법률적·제도적 이론구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형사사법 구조 하에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범죄자와 중요한 양 당사자로 대립되어 있다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형사절차 외적인 요소의 개입으로 해석되었고, 그것은 곧 절차의 지연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사고의 틀을 깨면서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하고 형사절차에 자신의 이익이 투영되도록 배려하려는 제반 노력은 최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피해자 보호적 관점에서 형사절차를 이해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형사사법제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면 자칫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 그리고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공격적인 피해자 지위의 보장이 실체적 진실발견·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과 갈등을 빚을 때에는 비례성의 원칙 및 이익형량의 원리에 따라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¹⁾

오늘날 피해자의 법적 지위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노

10) Kilchling, NStZ 2002, 57, 61.

1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P.263.

력들은 형사사법 이념이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소추권을 인정하고 있는 영국에서 소추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희망을 고려할 것을 시인하면서도 공익과 갈등이 빚어질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익이 공익을 뛰어넘어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여 일정한 해석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¹²⁾

2. 형사절차 진행에 따른 구분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렇게 밝혀낸 진실을 기초로 공정한 판결을 받아 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긴 하지만 여기에 적정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지 않으면 피의자 인권은 물론 피해자 인권까지 제대로 보장되기가 어려워진다.

종래의 적정절차의 원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같은 형사소송의 원리들은 주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확충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실체진실의 발견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는 국가기관의 각종 행위들은 피해자에게도 법익침해를 가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통제수단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 범죄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정

12)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35-36.

당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형사절차상 지위를 보다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어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절차에서는 수사단서 제공자,¹³⁾ 소송관계인,¹⁴⁾ 수사자료 및 증거 제공자, 신변보호 청구권자로서의 지위¹⁵⁾ 등이 있고, 공판절차에서는 증인, 공판정진술권 보유자¹⁶⁾로서 인정되며 기타 수사진행에 관한 통지 수령권자,¹⁷⁾ 형사보좌인 신청권자,¹⁸⁾ 형사절차상 배상명령 청구권자,¹⁹⁾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자로서의 지위²⁰⁾ 등이 인정되고 있다.

13) 범죄피해신고, 고소 등

14) 피해자는 소송능력과 소송행위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소송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소송관계인이 될 따름이라고 보는 것이 형사법학계의 전통적 입장이다.

1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

16)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17) 형소법 제258조 [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259조 [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8)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는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보좌인의 역할은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행하는 것이다(동법 동조 제3항).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조사과정에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19)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량사항인 탓에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재판 지연 초래 등의 이유로 현실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의 법률유보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소제기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는데 이는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에 근거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프랑스·독일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가 인정되어 온 대표적인 국가로서 1985년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대부분의 소추를 담당하여 왔으나 1985년 이후에는 국립기소청의 검사가 이를 담당하고, 순수한 개인에 의한 기소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도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인 주거침입·모욕·서신비밀침해·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²¹⁾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사인소추(Privatklage) 이용률이 낮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²²⁾ 프랑스에서도 사소제도(action civile)가 있는데 이 제도는 민사적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의 형사소추권과 긴밀히 결합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검사가 그것을 인수함으로써 인해 수사나 증거확보의 부담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³⁾

21) 독일 형사소송법 제374조 [사인소추(Privatklage)의 허용, 소추권자]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있어 피해자는 검사에 대한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인소추의 방법으로 소추할 수 있다. 1. 주거침입 2. 형법 제194조 제4항에서 이르는 정치단체에 대한 것이 아닌 모욕 3. 서신비밀침해 4. 상해 5. 협박 6. 재물손괴 7.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8.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보호법, 종자보호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및 조형미술과 사진작품 저작권 관련법 위반 범죄행위

동법 제172조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 ① 고소인이 피해자인 경우 제171조의 결정(검사의 공소제기 신청이 기각되거나, 검사가 수사절차를 정지한 경우)에 대하여 그 고지후 2주 이내에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검사장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그 고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2) Göppinger, Kriminologie, S. 164.; Meier, Kriminologie, § 8 Rdnr. 3.

23)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43.

제3장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제1절 미 국

1. 연혁 및 관련법률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형사사법제도에서 무시되었던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 강화하려는 입법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피해자의 권리운동 (The Victims Rights Movement) 내지 피해자 운동 (The Victim's Movement) 이 연방과 주정부 주도로 강력히 추진되어 1980년대 피해자보호제도의 확대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²⁴⁾

특히 1982년 레이건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아래 피해자의 고통을 조사하고 사법제도에 의한 피해자 처우를 평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권고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범죄피해자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1980년대 연방과 주정부의 피해자 보호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연방 및 주정부, 의회, 형사사법기관 및 사적단체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68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²⁵⁾

24)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통권 제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p.58.

25)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체포 후에도 피의자를 구금하지 말 것(보석의 부정과 예방구금) ② 체포와 예심사이 및 예심과 공판 사이에 지체하지 말 것(신속한 처리) ③ 유죄답변협상을 배제하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결정에 맡길 것 ④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반대심문을 제한할 것 ⑤ 위법수집증거법칙을 배제할 것 ⑥ 피해자를 양형절차에 참여시킬 것 ⑦ 피해자가 충분한 원상

이에 따라 1982년 연방정부 주도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WPA : The Victim & Witness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인정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보고서에 피해자 영향조사(Victim Impact Statement)에 관한 항목을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 원조를 위해 종래 보호관찰 조건으로 이용되었던 원상회복을 처음부터 독자적인 형벌로 규정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범죄피해자법(VOCA :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종합범죄통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 제14장에 규정되었고,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금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자 기금’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²⁶⁾

아울러 각 주에서는 이 법을 모델로 하여 피해자 및 증인을 보호하는 입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들은 피해자를 일정한 형태로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인정하는 것과 피해자의 범죄에 의한 손실을 재정 면에서 회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인 노력 이외에 1960년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움직임과 함께 피해자원조를 위한 전국조직(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피해자의 법률원조기구(Victims Assistance Legal Organization),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등을 비롯한 피해자 및 증인을 원조하는 공·사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VWPA : The Victim & Witness Protection Act)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 류병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42

26)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p.158.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은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정보권, 참여권, 보호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²⁷⁾ 이 법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 및 증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보호한다. 둘째, 연방정부는 이용 가능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피해자 및 증인을 원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것을 확실히 한다. 셋째, 이 법률을 각 주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입법의 모델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미연방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3년에는 '피해자 및 증인 원조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지침 (The U.S Attorney General's Guideline for Victim and Witness Assistance)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의 진행경과를 고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형사절차에의 참가를 인정하고, 중대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및 그의 일정한 가족은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사전고지(피고발자에 대한 체포, 법정예의 최초 출두, 보석에 관한 사항, 피고발자를 소추하는 절차 등)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연방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중대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일정사항에 관한 상담²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긴급한 사회적 및 의료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 협력함에 따라 다양한 부담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조를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²⁹⁾

27) VWPA를 '피해자의 권리장전'(Victims's Bills of Rights)이라고도 부른다.

28) 공소취소, 보석, 답변협의, 다이버전 프로그램 등

29) 미국 연방법률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로는 1. 피해자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2. 기소된 범죄자로부터 합당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권리 3.

나. 범죄피해자법(VOCA :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884)

범죄피해자법에 의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1965년 캘리포니아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다른 주에도 도입되었다. 당시 미국의 범죄피해자제도는 주로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동정하는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이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권리운동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보상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법이 1984년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조성된 범죄피해자기금(Crime Victim Fund)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원조와 함께 피해자의 구제에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여 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법의 최근의 경향은 보상적격자의 선별 기준을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예컨대, 종래에는 가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배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태도가 수정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 제도의 재원부족 해결을 위해 벌금을 사용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6년에 연방의 ‘반테러리즘 및 효과적 사형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이 제정되어 외국에서의 테러리즘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로부터 지급이 가능해져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재판진행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4. 피해자가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었을 경우 자신의 증언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범죄자와 관련된 모든 공개재판 진행에 참석할 권리 5. 사건에 있어 정부를 대표하는 검사와 협의할 권리 6.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7. 범죄자의 기소, 선고, 구속 그리고 석방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2. 관련기관 및 지원내용

가. 연방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OVC : Office for Victims of Crime)

198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법(VOCA)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과 경찰 등 법집행업무 종사자와 관련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목격자의 권리 및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의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 국가보상업무를 총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출판물 제작과 배포 및 공공교육과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³⁰⁾

나. 국제경찰장협회(IACP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의 피해자 지원 위원회(Victims Services Committee)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우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집행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자 지원 및 대우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경찰 내 피해자 지원기능의 창설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이를 현실에 반영하며, 대중과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권리신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설문지³¹⁾를 각

30) 경찰청,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2006, p.14.

31) 'Police-Based Victim Services for Survey'의 설문은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1. 관할인구, 경찰관서 총인원, 사법경찰관 인력운용 현황 등 해당 경찰기관의 일반현황 2.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담당자 및 피해자 지원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실천여

경찰기관에 배포하여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지원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 있다.³²⁾

다. 반폭력 연대 네트워크(Partnerships Against Violence Network)

연방범죄수사국(FBI) 등 7개 연방기구에서 나온 폭력 및 청소년 문제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면서 각 지역공동체에 폭력, 가정폭력,³³⁾ 약물 오남용, 피해자 및 청소년 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 민간기구

1972년 3개의 민간조직에 의해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각각 독립적으로 탄생한 이래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면서 착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피해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적극적인 로비활동과 계몽활동을 벌이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1984년 범죄피해자법(VOCA :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의 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해 연방에서 주정부를

부 3. 피해자에게 팜플렛이나 전단을 제공하는지 여부 4.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현황 5.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6. 기관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피해자를 어느정도 고려하는지 7. 언어소통이 안되는 외국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등이 있다.

32) 1980년 경찰행정에 대한 연구단체인 전국경찰서장회의(National Organization of Police Chiefs)는 가정폭력문제를 연구한 결과, 경찰이 가정폭력에 중재를 시도하기 보다는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조치로 체포의무규정(Mandatory arrest laws)를 두고 있다.

33) Thurman v. City of Torrington 사건 : 1985.6. Torrington에 거주하는 Thurman은 남편의 구타에 대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의 느장대응에 부상을 입고 경찰에 손해배상을 청구, 260만 달러를 배상받은 사건으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체포정책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재정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1980년 현재 200개에 불과하던 조직은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 크고 작은 단체의 수가 1만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뉴욕시의 민간조직인 피해자 서비스국(Victim Service Agency)은 자원봉사자가 4백여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상근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고,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조직도 다수 있으며, 교통사고와 재물피해의 피해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도 있다.³⁴⁾

또한, 피해자 원조를 위한 전국 조직으로 1975년 설립되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피해자 원조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와 1985년 설립되어 텍사스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피해자 센터(National Victim Center) 등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외에도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한 법제정과 개선,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 활동, 피해자 문제에 대한 조사와 계몽활동, 전국의 민관 피해자원조조직과 기타 전문가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3.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LA경찰국: LAPD)

로스엔젤레스 경찰국(LAPD)은 검찰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 지원제도(Victim Assistance)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검사실(District Attorney's Office)에 설치된 피해자-목격자-지원계획(VWAPs : Victim-Witness Assistance Projects)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검사실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지원 및 손

34) 경찰청,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p.12.

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지방검사실, 각 경찰서 및 보안관 사무실 등에 상주하는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을 통한 피해자 대상 전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며, 피해자와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연결, 피해자의 수사 및 법정 절차에 동행 및 지원, 증거로 사용된 재산의 신속한 환부를 위한 조력, 어린이, 노인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 충격이 큰 범죄에 대한 현장 응급지원 제공 및 위협을 받은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동행 및 신변보호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³⁵⁾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LAPD의 매뉴얼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관계인 전원의 진술 청취, 가능한 경우 가해자 검거 및 필요시 피해자에게 치료수단 제공, 검거가 불가능 할 경우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긴급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사보고서 작성,³⁶⁾ 최종적으로 검사는 수사보고서를 보고 범의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경찰 수사관에게 범죄사건으로 입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건하여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최상의 방법은 법원의 개입이라는 연구결과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LA시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미용실이나 여성전용 헬스클럽 입구에 911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위기전화(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NDVH)³⁷⁾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연방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최초의 사례로 지역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피해자가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35)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동향, 2004, pp.5.

36) 경미한 경우 市검사에게 '경죄' 혐의로, 중할 경우 '중죄' 혐의로 지방검사에게 제출

37) 전화번호는 정상인을 위한 1-800-799-SAFE와 장애인을 위한 1-800-787-3224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의 보호시설, 법률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가 피해자의 상황설명을 듣고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또는 보조(suppor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⁸⁾

4. 뉴욕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뉴욕주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피해원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양식을 통해 신청할 경우 관련사건의 재판진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는 관련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표현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는 사법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법정의 위치, 날짜, 시간 등의 정보는 물론 법원까지의 동행 및 교통수단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사건담당 판사에게 선고전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보호서비스 제공 및 가능한 빨리 피해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용주나 채권자에게 피해자의 상황 즉, 부재의 이유나 채권의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기명과 비밀이 보장되는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³⁹⁾

5.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38) 경찰청,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pp.13-14.

39)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동향, p.7.

가. 범죄피해자 보상제도(Victim Compensation Program)

미국의 모든 주는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범죄피해자보상법(Victim of Crime Act)을 시행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1965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그 후 1966년 뉴욕주, 1967년 하와이주, 1968년 메사추세츠주, 1977년 뉴저지주등이 차례로 도입하여 1992년 4월 메인주가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이 법률은 법적권리로서가 아닌 인도주의적 의무나 공공복지와 같은 은혜 또는 자비의 문제로 도입되었으나 1980년대 피해자 권리운동이 최고조에 달해 범죄피해 보상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법(VOCA)이 제정되면서 법적권리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가 범죄피해자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의 피해자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 제도의 재정적 기반의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었다.⁴⁰⁾

연방정부는 각 주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연방범죄의 범죄자들이 납부한 벌금 및 몰수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각 주가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보상금의 40%를 연방의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31개 주는 연방정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벌금 등으로만 충당하고 있으며 일반재원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주를 제외하고 12개 주가 벌금 등과 일반재원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범죄의 피해자이며, 대부분의 주에서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자격이 있으며, 1988년 VOCA가 개정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보상조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보와 수사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

40) 박광섭,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p.44.

범죄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생활비의 실질적인 상승에 따라 보상금의 상한도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범죄피해보상제도의 재원으로 세금보다 벌금이나 몰수금 등을 이용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적격자의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⁴¹⁾ 그러나, 이 제도로부터 구조를 받은 범죄피해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주가 운영자금과 요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가 실제 범죄피해 회복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당성을 높이는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피해자 의견진술(Victim Statement of Opinion)

피해자 의견진술은 양형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피해자 진술은 대부분 법정에서 구술로 행하여지나,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1990년까지 피해자 영향조사(Victim Impact Statement)는 연방과 48개 주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피해자 의견진술(Victim Statement of Opinion)를 채택한 주가 35개로 증가하는 등 미국의 형사절차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형사절차 참여 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원조의 충실보다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인 피해자인 일반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협력 및 신뢰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피해자의 양형절차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

41) 과거에는 39개주에서 가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자동적으로 신청적격자에서 배제되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그러한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 침입절도의 노인의 피해자, 상해를 입은 성폭행 미수의 피해자 및 행방불명 아동의 부모도 신청적격자로 인정하고 있다./ 류병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45

42) 앞의 글, p.48

되고 있는데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양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통제감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응보적 정의의 심리적인 만족과 이익증진에 부합함을 주된 논거로 제시하는 한편, 법관이 자신의 의견을 고려한 것에 만족하여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됨은 물론, 인격성 회복기여 및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품었던 소외감 역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의 양형절차 참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 형사의 구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형사절차가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영향조사(VIS)와 피해자 의견진술(VSO)은 일반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양형의 불균형과 자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가 양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된다고 느낄 경우에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실망과 불만만 가중될 뿐이며,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자유주의적 적법절차 모델과 상반되는 보수적 범죄통제모델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⁴³⁾

다. 원상회복(Restitution)

원상회복(Restitution)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던 피해자의 권리운동이 가져온 성과의 하나로, 법원이 범죄인에게 범죄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제재를 뜻한다. 즉, 범죄피해를 받은 개인 및 조직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주로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사회에 대한 상징적인 변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당초 몇몇 주에서는 보호관찰의 조건⁴⁴⁾으로 이용되었지만 1982년 범죄피해자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와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에 의해 독자적인 형벌로 권고되고 입법화됨으로써 1987년 말에는 모든 주에

43)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p.65.

44) 가석방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가 약 반수에 이르며, 가석방에 있어 대부분의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제도는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형사제재의 하나로써 제도화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상회복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적 안정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범죄자 관점에서 본다면 원상회복은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경제적인 배상을 통해서 책임감을 깨우치게 하며,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듯 원상회복제도는 피해자의 권리운동과 피해자대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피할 수 있지만, 실제 운용되는 원상회복 프로그램은 범죄통제 정책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범죄인의 사회복귀 또는 효율적인 형사사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피해자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운동은 1960년대 다양하게 전개된 사회 운동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의 고통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자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대책은 보수적인 ‘법과 질서운동’의 요청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직접 보호·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피해자 운동이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통제를 강화하려는 보수적인 ‘법과 질서운동’에서 비롯된 피해자운동에 흡수되는 경향도 찾을 수 있다.⁴⁵⁾

라.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원상회복에 의해 완전한 구제를 받은 피해자는 비교적 소수이고 대부

45)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pp.55-73.

분의 범죄인이 원상회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 제도에 의한 피해자 원조는 그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가해자, 피해자 쌍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조정제도’가 있는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조정인이 개입, 협의를 진행시키는 제도로서,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를 실현하고 피해변상을 촉구하며, 가해자의 자기책임을 자각하게 함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⁴⁶⁾

마.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비공식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제도’와 ‘원상회복제도’를 결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의 지시에 따라 동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중 중재인의 조언에 따라 피해사실과 서로의 감정을 논의하여 원상회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제도이다. 즉,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중재자의 참여로 면담 등을 주선하여 양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한다.⁴⁷⁾

제2절 독일

1. 연혁 및 관련법률

독일에서의 피해자 관련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여 범죄학과 형사정책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항상 고려하고 있다. 특히,

46)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47) 조정제도와 화해제도는 경미한 재산범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利害(Opferbelange)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여 왔으며 경험적 연구와 형법이론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 개혁을 이루어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⁴⁸⁾

범죄피해자는 70년대에 들어서야 범죄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범죄자적 시각(Täterperspektive) 즉, 형법적 통제과정을 범죄자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자 하는 관찰방법은 피해자학의 영향하에 급변하여 피해자보호(Opferschutz)가 범죄학의 중심이 되었다.⁴⁹⁾ 처음에는 실제적인 범죄피해자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나, 곧 잠재적인 피해자의 이익까지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포괄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에서 야기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피해자의 관점과 범죄예방의 관점이 함께 고려되기 시작하였다.⁵⁰⁾

국가독점 형법의 생성 및 발전은 피해자에 대한 일관된 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범죄자 추적, 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은 오직 피해자의 책무이며, 형사소송법 제374조의 사인소추(Privatklage)와 제172조의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는 이러한 사법적(私法的) 형사소추의 잔재로서 파악될 수 있다.⁵¹⁾

이렇듯 범죄피해자는 수세기동안 무시, 경시되어 왔고, 20세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 질병 및 비용의 부담으로부터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대가 그 주요 원인이다.⁵²⁾

48) Meier, Kriminologie, § 8 Rdnr. 1, 2.

49) Schwind, Kriminologie, § 19 Rdnr. 8. Albrecht, Kriminologie, S. 16.

50) Meier, Kriminologie, § 8 Rdnr. 58.

51) Göppinger, Kriminologie, S. 163.

52) Schwind, Kriminologie, § 19 Rdnr. 5.

독일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이미 고소권자(Strafantragsberechtigter), 사인소추권자(Privatkläger), 부대소송인(Nebenkläger), 기소강제권자(Klageerzwingungsberechtigter) 그리고 증인(Zeuge)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⁵³⁾ 범죄학의 주요관심 역시 지금까지는 주로 범죄의 발생분야에 집중되어, 연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범인과 범죄가 존재할 뿐, 피해자는 단지 부수적 개념일 뿐이었다.

범죄피해자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범죄사건과 그 사건의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⁵⁴⁾ 즉, 피해자는 증인(Zeuge)과 증거수단(Beweismittel)으로서만 기능할 뿐 그의 이해와 관심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⁵⁵⁾

특히, 특별예방(Spezialprävention) 즉, 개별 범죄자에 대한 영향이 지배적 형벌목적이 되고, 그와 결부되어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자 피해자에 대한 간과는 더욱 심화되었다.⁵⁶⁾

이러한 조류는 피해자의 행동 즉, 범죄발생시 피해자의 역할을 중점 연구하는 피해자학(Viktimologie)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변화를 거듭하여,⁵⁷⁾ 마침내 1987년 범죄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 OSG)이 제정된 이래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최초로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소송절차에의 참여권 및 협력권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이후 증인보호법(Zeugenschutzgesetz, 1998), 폭력예방법(Gewaltschutzgesetz, 2002), 범죄피해자권리개혁법

53) Meier, Kriminologie, § 8 Rdnr. 3

54) Meier, Kriminologie, § 8 Rdnr. 1.

55) Meier, Kriminologie, § 8 Rdnr. 2.

56) Albrecht, Kriminologie, S. 92.

57) Kunz, Kriminologie, § 29 Rdnr. 30. Meier, Kriminologie, § 8 Rdnr. 2.

(Opferrechtsreformgesetz, 2004)에 의해 보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소송절차내 범죄피해자의 지위

가.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학의 범주내에서 범죄피해자는 여러가지로 정의되고 있다.⁵⁸⁾ 먼저 '법규정으로부터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될 당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피해자로 표현된다.⁵⁹⁾ 또한, 관련자가 침해된 법익의 소유자이건 고소권한이 있건 관계없이 '범죄로 인한 모든 관련자'가 피해자 일 수 있다고 고려된다.⁶⁰⁾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범죄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파괴된 사람 또는 조직'을 범죄피해자로 파악한다.⁶¹⁾ 어떤 정의이건 범죄학의 범주내에서 피해자의 개념은 고정적이며 확정적이다.⁶²⁾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 개념은 오히려 유동적이다. 특정 범죄자 및 특정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범죄 및 책임확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가 투영(spiegelbildlich)되어 정의되기 때문이다. 즉, 범죄 및 책임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기초로 투영하여 피해자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신분이 위에서 언급한 책임확정으로부터 상당부분 독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죄혐의 부족으로 소송절차가 중지된다면 소송절차의 중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Verletzen) 개념은 계속 유지되고(형사소송법 제170조 제2항), 비디오 신문의 새로운 규정은 형사법원의 범죄 및 책임 확정전의 영역에서 이미 피해자 신

58) Kilchling, NStZ 2002, 57.

59) Paasch, zitiert nach Schwind, Kriminologie, § 19 Rdnr. 3.

60) Zipf, zitiert nach Schwind, Kriminologie, § 19 Rdnr. 3.

61) Schneider, zitiert nach Schwind, Kriminologie, § 19 Rdnr. 3.

62) Kilchling, NStZ 2002, 57

분은 시작된다(동법 제58조 a, 제168조 e, 제247조 a). 이 점에서 피해자학적 피해자 개념에 대한 소송법적 피해자의 개념간 일치가 있다. 즉, 범죄와 책임의 확정전이라도 피해입은 자는 모두 피해자로 본다.⁶³⁾

나. 피해자보호의 의의

1) 형법이론과 범죄수사 현실

피해자보호는 '국가 또는 비국가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의 대상인 범죄피해자는 아직도 형사소송에서 부수적 지위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 형사소송의 90% 이상이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개시되나, 소송절차내에서의 피해자는 증거배달인 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뿐이다.⁶⁴⁾

사인소추(Privatklage), 부대소송(Nebenklage) 등의 수단이 피해자보호의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소송법상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관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제적 의미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⁶⁵⁾

또한,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형법이론과 범죄수사의 현실간 괴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⁶⁶⁾ 다이버전(Diversion)의 현실 특히,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 TOA)에 관한 연구는 범죄학적으로는 확고히 자리잡은 특별예방적 요구에 대해 형법을 통한 필연적인 조건적 저항(조건 및 지시의 부과)을 증명한다.⁶⁷⁾ 즉, TOA를 시도하는 경우 특별예방적 요소인 인간적, 사회교육학적 표본이 아니라 소송해결 압박감에 대한 행정적 적법성(조건 부과 등)이 소송 참여자와의 관계를 지배한다.⁶⁸⁾

63) Göppinger, Kriminologie, S. 165.

64) Schwind, Kriminologie, § 19 Rdnr. 10.

65) Göppinger, Kriminologie, S. 164.; Meier, Kriminologie, § 8 Rdnr. 3.

66) Kilchling, NStZ 2002, 57, 60.

67) Brühl/Deichsel/Nothacker, Strafrecht und Soziale Praxis, Rdnr. 527.

68) Albrecht, Kriminologie, S. 362.

모든 형벌목적규정은 아직도 여전히 최선의 대응을 범인에 대한 처벌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법적주체로서 권리의 개별 소지자로서의 피해자는 여전히 형법학에서 경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처벌 외에 Diversion 또는 선택적 신고처리 등의 법제도적, 현실적 상황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음은 지배적 형법이론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2) 경찰의 선택적 신고처리

적절한 형사소추도 피해자 보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범죄는 피해자를 통해 직접 신고 되고, 이러한 경찰에의 고소접수를 통해 형사절차는 개시된다.⁷⁰⁾

법적으로 경찰수사는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에 종속되어 구체적인 범죄혐의(konkreter Anfangsverdacht)가 있을 때에는 조사의 무가 부과된다(동법 제152조, 제163조). 그러나 법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소법정주의가 관철될 수 없는데 첫째, 너무나 많은 형법규정 때문에 모든 의심상황을 명확히 분류할 수 없고, 둘째, 형법전의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부가형법(Nebenstrafrecht)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그밖에 경찰공무원은 법적임무와 사회·정치적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 긴장관계 하에 있기 때문이다.⁷¹⁾

신고의 접수를 통한 경찰의 반응적 활동(reaktive Tätigkeit)에 대비되는 개념인 독립적·자주적 경찰수사활동(proaktive Tätigkeit)은 사전적(事前的) 경찰활동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피해자인 범죄 또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중요하다.⁷²⁾

69) Kilchling, NStZ 2002, 57, 60.

70) Schwind, Kriminologie, § 20 Rdnr. 9e.

71) Albrecht, Kriminologie, S. 175.

72) Albrecht, Kriminologie, S. 174.

이러한 사전적 경찰활동의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접수를 통한 수사의 경우에도 선택적 과정(Selektionsprozess)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사실상의 기소편의주의(faktisches Opportunitätsprinzip)에 해당한다.⁷³⁾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고소 희망자의 21%가 경찰에 의해 접수가 거절되고, 재산범죄가 97% 조사된 반면 대인범죄는 70%가 조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물론 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대인범죄에 경미범죄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고소당시 범인이 알려져 있다면 계속 수사의 비율이 80%정도 유지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단지 52%만이 계속 수사되고, 모든 사건의 37%에서 최초 인지후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상황이 최후상황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⁷⁴⁾

3) 검찰의 종결 현실

검찰(Staatsanwaltschaft)은 경찰에 의해 제출된 일련의 조사과정·결과를 사법적 형태로 가공하여 법원에 기소(Anklage)하거나 소송의 중지(Einstellung)를 통해 형사절차를 종결하며, 최근에는 혐의부족에 의한 소송중지의 비율 보다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중지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점점 더 비공식적 처벌관청(informelle Sanktionsinstanz)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⁷⁵⁾

특히, 검찰에 의한 소송의 중지는 조건부과 없는 소송중지(형사소송법 제153조, 소년법원법 제45조) 또는 조건부과하의 소송중지(형사소송법 제153조a 제1항, 소년법원법 제45조)를 통해 발생하는데 조건부과하의 중지보다 조건부과 없는 소송의 중지가 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벌과금의 납부 등 후속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⁷⁶⁾

73) Albrecht, Kriminologie, S. 184.

74) Albrecht, Kriminologie, S. 176.

75) Albrecht, Kriminologie, S. 190.

결국 이와 같은 검찰의 소송절차 종결현실은 『검찰에 의한 형사재판권의 소멸』 또는 『법률의 비공식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며, 행정권(검찰)이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수취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그 결과 형사정책의 중점이 형사소추기관과 법무부의 판단으로 옮겨지게 된다.

4) 다이버전(Diversion)

1980년대 이래 형사정책의 주류로 등장하여 각국 형사절차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Diversion⁷⁷⁾의 경우, 독일은 1990년 소년형법(Jugendgerichtsgesetz : JGG) 제45조와 제47조에 이를 수용하였다.

독일 소년형법 제 45조는 형사소송법 제153조가 규정하는 1) 책임이 輕하고 2) 형사소추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3)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판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합치적 재량(pflichtgemäßes Ermessen)에 따라 검사(Staatsanwaltschaft : StA)가 형사소추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는 제4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이 형사소추된 경우 판사(Richter)가 검사의 동의하에 그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⁷⁸⁾

결국 소년범의 경우 법이 규정하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절차를 배제하고, 교육과 교화를 포함한 非사법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년의 낙인적 처벌 회피, 2차범죄 예방 및 범죄경력화 방지 등의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있다.⁷⁹⁾

76) Albrecht, Kriminologie, S. 191.

77)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번역

78) 이에대해 독일 소년형법의 현실을 분석한 일부 학자들은 소년형법 제45조와 제47조에 따른 검사와 판사에 의한 소송중지가 단지 1980년대 이래 지배적인 Diversion의 경향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이고, 동 규정의 도입이 검찰과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처리용량 저감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케 할 만큼 오늘날 그 실제적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비판한다. Kaiser/Schöch, Kriminologie, Jugendstrafrecht, Strafvollzug, S. 185.

79) Albrecht, Kriminologie, S. 364.

이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Diversion은 결국 그 주체가 검사와 판사로 제한되고, 경찰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훈방 또는 형사절차로의 진입 억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일부 州를 시작으로 『경찰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durch Polizei)』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경찰 훈방권의 입법적 토대가 점차 마련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즉, Schleswig-Holstein과 Berlin주의 다이버전 지침(Diversionsrichtlinien)⁸⁰⁾은 경찰이 절차중지(Einstellung)⁸¹⁾ 위한 전제조건(Voraussetzungen)을 스스로(selbst) 조성(schaffen)하고⁸²⁾, 검사에게 소송절차를 중지할 것을 제안(Vorschlag)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원상회복(Wiedergutmachung) 및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를 유도(anregen)할 수 있음은 물론, 교육적 대화(Erziehungsgespräch) 및 훈계, 경고(Verwarnung)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소년형법도 소년범에 대한 경찰조사 종료 후 관련서류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 때 Diversion에 근거한 형사절차로부터의 배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절차 배제인 훈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0) 독일 연방 16개주 가운데 개별 주별로 다이버전 지침(Diversionsrichtlinien der Bundesländer)을 두고 있는 주는 Berlin, Bremen, Thuringen, Hamburg, NRW, Sachsen, Schleswig-Holstein, Saarland 주 등 8개주이다.

81) Einstellung은 직역하면 절차중지가 되나 여기서는 형사절차로부터의 배제 즉, 훈방을 의미한다.

82) 독일 소년형법(JGG) 제45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훈방)의 전제조건은 첫째, 교육적 조치가 이미 행해졌거나 진행중에 있을 것 둘째, 피해자와의 화해에 이르기위한 소년의 노력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Diversion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이 교육적 조치에 관여하거나 피해원상 회복을 적극 도려해야 함을 의미

가. 입법 경과

형법에서의 피해자의 재발견과 더불어 논의된 법 정책적 경향변화는 결국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변화로 귀결된 바, 독일의 경우 1987년 발효된 범죄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 : OSG)⁸³⁾은 그 논의의 정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⁸⁴⁾ OSG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권 및 참여권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부대소송(Nebenklage)의 개혁은 OSG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⁸⁵⁾

이후 '국가형벌권의 취소를 통한 피해자 이익의 강화'를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 : TOA)를 1990년 소년형법(Jugendgerichtsgesetz : JGG)⁸⁶⁾에 반영하고, 이를 1994년 형법(Strafgesetz : StGB)⁸⁷⁾, 1999년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 StPO)⁸⁸⁾에 각각 법제화하였다. TOA의 근본이념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접촉을 용이하게하여 그들 사이에 원상회복(Wiedergutmachung)을 약속하게 하고, 실행된 원상회복이 소송의 정지(Einstellung) 또는 형의 감경(Milderung der Strafe)을 위한 근거로써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 증인보호 특히, 피해자증인의 보호를 위해 1998년 증인보호법(Zeugenschutzgesetz : ZschG)

83) Erst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OpferschutzG) vom 18. 12. 1986 (BGBl I, 2496)

84) Rieß/Hilger, NStZ 1987, 145.

85) Böttcher, JR 1987, 133.

86) TOA는 법관의 명령에 의해 독자적으로 부과되거나, Diversion의 범위에서 형사소추를 배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다.

87) 형법 제46조a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배상]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 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배상하였거나 또는 배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손해의 배상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포기를 요하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배상한 경우 법원은 1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88) 형사소송법 제155a [화해노력] 검사와 법원은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와 법원은 양자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을 제정하여, 부대소송 참여가능 범죄 확대, 부대소송 조력자(Nebenklägerbeistand)에 대한 요금규정 개혁, 증인변호인(Zeugenbeistand)·부대소송변호인(Nebenklgerbeistand) 규정 신설, 신문내용의 비디오 녹화·사용 및 신문의 비디오 실시간 중계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

2002년의 폭력보호법(Gewaltschutzgesetz : GewSchG)에는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특별규정이 반영되었고, 2004년 피해자권리개혁법(Opferrechtsreformgesetz : OpferRRG)에는 신문시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 형사소송절차 내에서의 위자료청구권 행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이익 및 법적지위의 강화를 위한 고려를 지속화하였다.

나.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사건과 이러한 사건의 사법적인 처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피해자는 오랜 기간동안 형법이론과 범죄학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에서도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과 형법의 개념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현대 형법은 범죄에 대한 소추와 처벌을 국가가 배타적으로 행하는 사안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피해자가 참여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단지 증인과 증거수단으로 기능할 뿐 피해자의 이익과 관심은 형사절차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

또한, 60년대 초반과 70년대 초반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거대한 형법개혁 이후로 특별예방(Spezialprävention) 즉, 각각의 범죄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인 형벌목적이 되었고, 이와 결부된 범죄자에 대한 관심의 집중은 피해자를 더욱 간과하게 하였다. 물론 80년대 이후로 피해자의 이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험적 연구와 형법이론에서의 학문적 노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정책적인

개혁추진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었다.

1) 피해자 보호

관련 법규정은 피해자를 위해 명백하게 개선되었다. 인격영역에 대한 보호가 개선되었으며 부차적인 피해자화에 대한 위험이 감소되었다.

피해자(Opfer) 보호(Schutz)는 각각의 피해자(Verletzte)가 수사절차에서 이미 변호인을 보조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률상의 보조는 단지 절차에 부대소송인(Nebenkläger)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Verletzte)를 위한 법규정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는 보조인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피해자 보조인의 권리는 수사절차에서는 검사에 의한 그리고 공판절차에서는 법원에 의한 피해자신문에 집중된다. 특히 그는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는 그에 대한 신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 즉, 배우자 또는 친족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⁸⁹⁾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질문권의 제한 혹은 증인신문시에 피고인의 퇴정 혹은 비공개외의 공판절차에 의해 보호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비디오기술을 이용한 신문이 제시되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증인들은 통상적으로 부담이 되는 여러 번의 신문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즉 초기의 신문을 비디오기술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이후의 절차단계에서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문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해당규정은 법관에 의한 그리고 검사에 의한 신문 뿐 아니라 경찰에 의한 신문을 위해서도 적용된다. 그와 동시에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우선은 재량규정이 중요하며, 증인신문은 그에 따라서 녹화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89) Rieß/Hilger, NStZ 1987, 145, 154; Böttcher, JR 1987, 133, 136.

16세 이하의 자가 피해자로서 신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통례적으로 녹화되어야 한다.

비디오를 이용한 이러한 신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자주 이용되었는가에 대한 통계조사는 유감스럽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막대한 기술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소모로 인하여 이러한 기술기구는 아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신문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 특히 소위 『직접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그러한 신문방법을 억제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도 비디오신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물론 녹화가 아닌 실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시청각적인 전달을 의미한다. 법규정은 재판장과 그 밖의 소송절차 참여자는 법정을 이탈하지 않으며 증인은 법정이지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물게 한다는 영국에서 조사되고 입증된 모델을 견본으로 삼고있다. 이 규정으로 공판절차에 모든 소송절차참여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단지 예외규정으로 제시될 뿐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피고인의 퇴정과 비공개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우선한다. 또한 증인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 중대한 불이익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소위 시청각적인 증인신문이 지시될 수 있다.

2) 피해자 권리

지금까지 언급된 규정이 소극적인 보호예방책인 반면, 다음은 적극적인 정보제공 요구권과 참여권에 관한 것이다.

먼저, 당해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고발 혹은 고소를 한다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법원 역시 피해자(Verletzte)에게 그의 고소에 대해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서류열람청구권이 인정되며, 더욱이 이러한 청구권은 수사절차에서도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피의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가 서로 상반되어 대립할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이익이 우월하다면 서류열람은 거절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 적극적인 참여권이 존재한다. 특히 부대소송권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개인의 고유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특히 성범죄, 모욕죄, 상해죄, 감금죄, 살인죄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부대소송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수사절차에서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⁹⁰⁾

1986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에 의하여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피해자의 지위를 본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의 법 상태를 개선하려는 성질의 것이었다.⁹¹⁾ 따라서 이 법에는 형사소송법(StPO), 법원조직법(GVG)은 물론 형사절차를 이루는 주요 관련 법률의 전면 또는 부분개정을 포함하는 등 방대한 내용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내용을 개관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인정하였다. 즉, 형소법 제5편에 제4장을 신설하여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90)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지위개선에 관한 제1법률(Erst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OpferschutzG) vom 18. 12. 1986)'

91) 독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 법과 관련된 기타 법률의 효력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소위 Artikelgesetz로 분류된다.

부대공소제도(附帶公訴制度, Nebenklage)의 근본적인 개정에 의하여 특별한 피해자 그룹에게 강화된 소송참가의 권한(Beteiligungsrecht)이 부여되었다.⁹²⁾ 피해자의 일반적인 참가권한은 정보획득권, 변호사 등에 의한 원조를 받을 권리, 소송기록열람권, 부대공소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참가인의 권한 강화 등이다.⁹³⁾

둘째, 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될 경우 증인신문을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증인신문시의 피고인의 퇴정에 관하여 퇴정범위를 확대하여 증인보호를 강화하였고, 공개금지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71조의b를 신설하여 재판공개주의를 제한하였다.

셋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강화되었다. 즉, 다음 세 가지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장애를 제거하였다. i) 부대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절차의 요건을 완화하여 간이공판절차는 소송물의 가격에 관계없이 이를 할 수 있게 하였다(형소법 제406조 제1항), ii) 부대소송은 주장된 청구원인에 한정하거나 주장된 청구의 일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형소법 제406조 제1항), 형사판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라는 부담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iii)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에 대한 지불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형소법 제459조a 제1항). 이로 인해 벌금의 채권자

92) 살인, 살인미수, 성범죄, 모욕명예훼손, 상해, 인신매매, 폭력보호법위반 등에 따른 피해자와 기소강제절차를 통하여 공소제기 되도록 한 자는 제기된 공소에 공동원고로서 참가할 수가 있다.(Nebenklage 부대공소제도, 형소법 제395조) 이때 부대소송 원고(Nebenkläger)는 형소법 제397조 및 제397a조에 따라 무제한 공판재정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가진 변호사의 대리출석권, 검사와 동일한 의견청취권, 검사에게 고지하는 모든 결정, 일정의 고지, 변호사를 통한 기록열람권, 법관감정인 기피권, 재판장의 명력에 대한 불복권, 재판장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권,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및 소송비용지원요청권(Prozesskostenhilfe)을 가진다.

93) Böttcher, JR 1987, 133. 부대소송원고 이외의 피해자는 다소 약화된 피해자 권한을 가지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이들 일반피해자에게 소송관련 정보권(Informationsrecht)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

인 국가보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우선시하게 되었다.⁹⁴⁾

또한, 피고인에 대한 민사적 배상청구권을 형사소송의 절차에서 관철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원래의 형사소송절차에 재산권 청구 관련 소송이 추가되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신청을 해야만 한다.(Adhäsionsverfahren, 附帶抗訴, 형소법 제403조, 제404조)⁹⁵⁾ 이를 통해 절차를 달리하는 여러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모순되게 판결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⁹⁶⁾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형사소송절차를 통한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부대항소 절차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소송가액의 상한을 폐지하였으나⁹⁷⁾ 결국 독일법 현실에서는 위 Adhäsionsverfahren이 확고한 지위를 얻지 못했고, 형사절차에서 아무런 의미도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⁹⁸⁾ 부대소송의 실패이유로는 민사절차에서의 무기평등이 형사절차의 모든 부문에서 지켜질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의위나 방어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변호사에게 동 제도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법관도 본래의 소송에서 일탈하여 소송지연가능성이 있는 이 제도를 선호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⁹⁹⁾

결론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독일의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가 단순한 소송의 객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소송의 주체로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⁰⁾

94) Rieß/Hilger, NStZ 1987, 145, 154; Böttcher, JR 1987, 133, 136.

95) Adhäsionsverfahren(부대항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독일 형소법 제403조는 부대항소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정식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아직 다른 법원에서 계속중이지 않을 경우, 그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에서의 절차에 있어서는 소송대상의 가액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96)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부대소송제도를 계수하여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이 제도를 수용하였다.

97) Rieß/Hilger, NStZ 1987, 145, 156.

98)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vor § 403 Rdnr. 1.

99)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vor § 403 Rdnr. 2.

4) 증인보호법(Zeugenschutzgesetz)¹⁰¹⁾

1990년대 중반부터 증인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피해자이면서 증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소위 피해자-증인이 논의의 핵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소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부담으로부터 아동증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1998년 증인보호법의 발효를 이끌었다. 이 법의 규정들은 특히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의 포괄적 보호를 가능케 하고 있는데 ① 부대소송으로 참여가능한 범죄를 확대하고 ② 증인변호인(Zeugenbeistand), 부대소송원고 변호인(Nebenklägerbeistand) 제도 신설 ③ 신문내용의 비디오 녹화 및 사용, 신문의 비디오 실시간 중계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특히, 증인변호인의 경우 첫째, 신문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둘째, 그의 보호 필요한 이익이 다른 방법으로는 고려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가 지원된다.¹⁰²⁾ 또한 부대소송원고의 경우 역시 국비로 변호사를 붙일 수 있는데 자비로 변호인을 구해야 하는 일반 피해자변호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아주 강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¹⁰³⁾

새로이 도입된 형사소송법 제58a조에 따라 증인으로서의 모든 신문절차는 동시녹음카메라로 녹화가 허용된다. 이는 임의규정이지만 16세 이하의 아동 피해자증인이거나 공판절차에 불출석이 염려되는 증인의 경우는 강제녹화 되어야 한다.¹⁰⁴⁾ 또한 형사소송법 제247a조에 따라 공판절

100) Kaiser, Die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S. 12.

101) 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und der Bundes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 (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 Zeugenschutzgesetz - ZschG) vom 30. 4. 1998 (BGBl I, 820)

102) Seitz, JR 1998, 309, 310 f.

103) Rieß, NJW 1998, 3240.

104) Rieß, NJW 1998, 3240, 3242.

차에서는 비디오 증계를 통한 증인신문도 가능한데(임의규정) 그 허가요건으로는 첫째, 증인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 위험이 다른 방법으로는 방지될 수 없을 것 둘째, 증인출석에 특별한 방해요소가 있거나 출석이 기대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제247a조와 달리 강제규정이므로 수사판사는 반드시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68e조)¹⁰⁵⁾

5) 폭력보호법(Gewaltschutzgesetz)¹⁰⁶⁾

폭력행위의 피해자는 지금까지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범죄자가 법률상 유효한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행위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논의의 중심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주거공동체에서 생활한다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피해자는 그의 부인 혹은 동반자 혹은 그의 자녀가 된다. 남성이 그의 부인 혹은 그의 자녀를 구타하고, 강간하고, 이러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면,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여성의 집'과 같은 특정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폭력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주거지를 떠나야 한다.¹⁰⁷⁾

핵심적인 것은 민사법의 규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가정법원은 가해자가 설사 지금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을지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다고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잠정적인 권리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즉 매우 신속하게 조치를 지시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형법보호를 통해 지지되는데 가해자가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¹⁰⁸⁾

105) Diemer, NJW 1999, 1667, 1669.

106) Gesetz zur Verbesserung des zivilrechtlichen Schutzes bei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sowie zur Erleichterung der Überlassung der Ehemwohnung bei Trennung (Gewaltschutzgesetz GewSchG), BGBI. 2001 I, 3513.

107) Schwind, Kriminologie, § 20 Rdnr. 40.

6) 피해자권리개혁법(Opferrechtsreformgesetz)¹⁰⁹⁾

2004.9.1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권리개혁법(OpferRRG)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향상을 위한 오랜 법정치적 숙고와 노력의 결과로서,¹¹⁰⁾ 동법의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하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감에 있다.¹¹¹⁾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살인범죄에 있어 국비로 지원되는 피해자측 변호사는 장래적으로 유족에게 귀속된다. ② 피해자도 증인(Zeuge)의 지위를 가지므로 증인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는다. ③ 위자료청구(Schmerzensgeldansprüche)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함께 결정된다. ④ 증인신문의 비디오녹화는 증인의 동의(Zustimmung)하에 허용될 수 있다. ⑤ 피해자에 대한 신문시 조사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자를 동석케 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성되고 통일된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내지 통합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별 법률만이 공포되었는데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내지 형법의 규정들이 변화되고 보충되었다. 1987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이래 이미 상당부분이 입법화된 탓에 가장 젊은 법인 2004년의 피해자권리개혁법의 경우 입법영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법규정들이 피해자를 위해 현실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가져왔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¹¹²⁾

108) Schwind, Kriminologie, § 20 Rdnr. 41.

109)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Opferrechtsreformgesetz: OpferRRG), BGBl. 2004 I, 1354.

110) Höynck/Jesionek, MschrKrim 2006, 88.

111) Hilger, GA 2004, 478.

112) Hilger, GA 2004, 478. 486.

7) 형법 총론에서의 원상회복과 가해자-피해자-화해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권리의 확대와 함께 원상회복(Wiedergutmachung)과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¹¹³⁾에 유리한 국가의 형벌청구권의 취소를 통한 피해자이익의 강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는 피해자의 이익을 능가하는, 원상회복을 위해 형벌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중재자에 대한 관념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관념은 피해자의 이익을 증거로 제시한다. 매우 많은 피해자가 우선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희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고 있다.¹¹⁴⁾

원상회복개념의 특별한 형태는 소위 가해자-피해자-화해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외국의 모델에 근거하여 80년대에 가해자-피해자-화해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소년범에 대해 시행되었고, 현재에는 성인범을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원상회복이 형식적 형사절차의 정지를 위한 근거로서 혹은 형벌의 완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접촉하도록 하고 그들 사이에 원상회복을 위한 행위에 합의하도록 한다는 근본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1990년의 소년형법에 수용되었다.¹¹⁵⁾ 이에 따라 가해자-피해자-화해는 법관이 독자적으로 혹은 소위 다이버전의 범위에서 형사소추를 배제하는 조건으로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⁶⁾ 즉, 이를 통

113) 독일 형법 제46a [Täter-Opfer-Ausgleich, Schadenswiedergutmachung, 가해자-피해자-화해, 손해의 배상] 1.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 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배상하였거나 또는 배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손해의 배상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포기를 요하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배상한 경우 법원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4) Schwind, Kriminologie, § 20 Rdnr. 35.

115) 1. JGGÄndG vom 30. Aug. 1990: BGBl. I, 1853

116) Frehsee, in: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117, 121. Rössner/Klaus,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49, 62.

해 형이 감경되거나, 특정 전제조건하에서는 완전히 형 면제 될 수도 있다.¹¹⁷⁾ 끝으로 가해자-피해자-화해는 형법상의 특별규정에 근거한다.

그 동안 가해자-피해자-화해와 원상회복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해자의 책임이 중하지 않다면 그리고 형사소추에서의 공적 이익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통하여 배제될 수 있다면 공판절차의 진행 없이 형사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¹¹⁸⁾ 이는 소년형법뿐 아니라 1994년부터는 성인형법에도 적용되고 있다.¹¹⁹⁾¹²⁰⁾ 또한 형사소송의 주 심리에서도 동일한 조건하에 형식적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 이외에 가해자-피해자-화해 혹은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은 법원이 형사처벌을 완전히 간과하거나 혹은 형벌을 감경하게 할 수 있다.¹²¹⁾ 동일한 사항이 보호관찰부 형집행정지에도 적용된다. 1999년 TOA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의무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됨으로써 TOA의 적용이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¹²²⁾

8) 범죄피해자 원조제도

독일의 피해자 원조활동을 활발히 이끌고 있는 단체로 백색고리(Wei ßer Ring)가 있다.¹²³⁾ 1976년 마인츠(Mainz)에서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현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통일되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초 단체가 구성될 당시 발기인의 상당수는 경찰 관계자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대부분도 현역 또는 전직 경찰관 이었

117) Dölling/Heminger,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203, 370.

118) Schwind, Kriminologie, § 20 Rdnr. 35b. Rössner, Bewährungshilfe 1994, 18.

119) Frehsee, in: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117, 121

120) 독일 형법 제46a

121) Bannenberg/Uhlmann,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1, 8.

122) Schwind, Kriminologie, § 20 Rdnr. 35a.

123) <http://www.weisserring.de/>

다. 협회의 재정은 회원 및 일반의 기부금과 유죄판결의 벌금으로 충당된다.¹²⁴⁾ 피해자원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고, 다른 자금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동행하여 청문과 공판정에 나가고, 피해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 기관을 소개하는 일 등을 수행하고 있다.

4.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독일 경찰은 형식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하므로¹²⁵⁾ 비록 피해자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대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이 영·미와는 사뭇 다르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의 형사법 개정작업을 통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형사화해 등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제도로 정착되었으며, 1976년에 성립한 피해자보상제도의 운영을 비롯한 피해자 대책 일반의 수립과 집행은 연방과 각주 법무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연방 법무성이 발간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Opfer Fibel)’는 범죄신고에 관한 사항, 경찰과 검찰의 책무, 증인의 의무와 권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¹²⁶⁾

독일에서 피해자 대책 일반의 수립과 집행은 연방과 각 주 법무성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 독일 경찰도 1970년대 중반 이래 경찰활동 과

124) 개인회원의 경우 월 2.50 Euro, 부부회원의 경우 월 3.75 Euro의 최소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및 피해자 정책관련 정보를 소식지로 받아볼 수 있고, 회비 및 기부금의 경우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125) 독일 경찰은 자체 집행기구(Vollzugsapparat)가 없는 ‘손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서 존재하므로 독자적 수사활동이 불가능하다. 법현실 또한 수사의 개시와 진행은 경찰의 판단에 따르며, 경·중범위 범죄수사는 검사개입 없이 경찰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독일에서는 경찰이 법현실에 있어 ‘사실상의 수사주재자(faktische Herrin des Ermittlungsverfahren)’로 지칭되며, 경찰의 인적·기술적·정보적 우위로 인해 수사주재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고 독일 검찰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26)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치안연구소, 2002. pp.204.

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특히 독일 연방형사국(Bundeskriminalamt : BKA)의 범죄연구소에 1976년도부터 피해자학 연구분야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약 30여년간 다양한 피해자문제를 다루어 옴으로써 독일 피해자보호정책 개발에 기여를 해왔다.¹²⁷⁾

많은 범죄학자들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된 이후 연방형사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회의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강연회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1995년 독일 연방형사국은 그 해를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와의 전쟁(Opferschutz und die Kriminalitätsbekämpfung)'의 원년으로 기치를 내걸고 범죄피해자를 수사하거나 기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 바 있다.

① 피해자의 권리는 헌법상 인간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과연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 예방책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보호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범죄예방 수준이 외국과 비교하여 타당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찰과 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 피해자로서의 증인 그 외의 일반 증인 등에 대한 보호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그들과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감

127)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97.

수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잘 제공해 주어야 하고, 신뢰를 심어주어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건진행 과정에서는 물론, 사무실의 구조나 설비도 피해자나 증인에게 편안한 기분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⑤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후에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적정시점에 피해자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⑥ 심각한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 피해자지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상을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좋은 의료시설이 요망된다.

⑦ 가해자-피해자-화해 절차를 밟더라도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를 묻어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 의사에 반하여 수행해서는 안된다.

1998년 독일 Hessen주의 수도인 Darmstadt 경찰본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Pro-Opfer'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전문성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범죄통계 및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집단(Arbeitsgruppe)과 통제집단(Kontrollgruppe)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하면,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로고 및 표어를 제작하고 피해보상법률에 관한 안내책자를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서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내부와 외부에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강연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언론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민의 신뢰도 강화되었다

고 잇달아 보도하였다. 또 이러한 피해자보호활동의 성공적 수행은 피해자의 범죄신고를 촉진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경찰행정의 협력자(Verwaltungsnhe)'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산하 50개 지역경찰서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보호위원(Opferschutzbeauftragte)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민간 자원봉사자인 피해자보호위원은 경찰이 전문적 피해자보호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쾰른대학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Victim'이라는 특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나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직 설립에도 경찰이 적극 관여하였다. 대부분의 경찰서는 동영상 및 음향송수신장치에 의한 신문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¹²⁸⁾ 어린이 피해자 또는 증인을 위해 놀이방처럼 꾸며진 조사실도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 주경찰은 법무, 여성, 소년, 가족, 교육, 과학 및 보건 등 피해자 관련 국가기관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보호에 공동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 하에서 내무성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 경찰을 연계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녀의 집' 이나 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110번'의 설립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독일의 경우 경찰의 증인보호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각 주간 '공동지침'으로 각 기관의 권한의 분담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주거의 안전확보나 이사 등과 같은 생활환경 변경에 따른 부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증인보호를 위하여 개명과 같은

128) 독일 형사소송법 제58조 a

인적사항 변경까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독일 경찰과 검찰은 범죄발생시나 범죄신고 접수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위험성을 예측하여 확정하는 활동을 중시한다. 구체적인 위험상태의 평가에 고려하고 있는 요소로는 범죄행위의 종류와 경중, 행위자의 위험성, 행위자의 환경, 증인의 인적사항, 소송절차의 진행상황 등이라고 한다.

한편, 독일 경찰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 접촉시 수행해야 할 임무와 활동목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우에 있어 상호 공평하고 동등한 지위의 보장, ② 적정하고도 전문적인 개입, ③ 투명한 사건처리, ④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활동에 우호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통한 사건의 실체 및 피의자 파악, ⑤ 방법계획 및 방법조치의 기초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일반인에 대한 피해 예방정보로 제공, ⑥ 피해자지원을 통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감소, ⑦ 범죄를 통하여 야기된 피해와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⑧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⑨ 이해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도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개개인의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줄 것, ⑩ 상담을 통하여 다른 전문적인 피해자지원 전담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적절하게 안내 및 연계를 시켜줄 것, ⑪ 형사소송법이나 피해자보호법 등에 의한 제반권리나 형사절차 진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안내할 것

제3절 프랑스

1. 연혁 및 관련법률

프랑스에서의 범죄피해자는 전통적으로 검사와 나란히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권리가 인정되어 온 바, 피고인, 검사와 함께 피해자인 ‘사소원고인’을 소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사소권(私訴權, Action Civile) 제도(형사소송법 제4조, 제5조) 또는 부대사소(附帶私訴)라고도 불리는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¹²⁹⁾ 즉,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죄의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 지불도 명하게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청구권을 인용하는 배상명령 절차와 사인소추제도, 기소강제절차 그리고 부대공소제도의 성격이 혼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³⁰⁾ 특히,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사소제도를 중심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지원 이외 기타 다양한 피해자 보호책을 발전시켜 왔는데 1977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제5조는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실효성에 흠결이 있었던 조직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요건하에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였고, 1988년의 ‘범죄피해자보호강화법’은 1977년의 ‘국가보상제도’를 확충하여 정신적 손해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86년에는 ‘국립 피해자원조 중계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원조활동과 범인과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중계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93년에는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이전에 검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할 것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에 이르렀다.¹³¹⁾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사법당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129) 안영훈,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 강론, 치안연구소, 2000, pp. 20.

130)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2004, pp.158

131) 박강우, 프랑스에서의 피해자학 연구 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p.71

노력해야 한다(전제조항 II),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협조하여야 한다(41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불안, 육체적 고통 등으로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에 수사재개가 가능하다(41조). 또한 피해자 지원단체는 은신처의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실상, 법률상의 각종 조언, 수사기관 동행,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 물질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행할 수 있다(41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권리, 민사소송 절차 및 변호인 선임권,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피해자 지원서비스 및 일정요건하의 일정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절차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53-1조),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예심판사는 피해자에게 형사소송의 개시, 민법상의 권리 및 소송절차 공지 등의 의무가 있다(80-3). 법관은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피해의 중요도 및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1-1).

2.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가. 피해보상 제도

1977년 범죄피해보상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장해의 존재와 더불어 피해자의 경제적 빈곤상태와 다른 손해보전 수단의 흠결 등 그 요건이 엄격하였으나, 이후 절도,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중 일정한 수입수준 이하의 피해자에게도 일정액의 보상을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지급대상도 프랑스와 호혜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와 적법하게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1985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을 보상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테러리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금을 신설하고, 1990년에는 신체장애의 보상에서 경제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상 금액의 상한제한을 삭제하였다.¹³²⁾

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피해자는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일반 시민처럼 범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 이외에 특별한 권리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중재절차의 주된 당사자가 되며, 피해변상 여부가 불기소 결정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소(私訴) 당사자의 지위에서는 검찰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판사에게 사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고, 혐의자를 직접 소환,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변호인 참여권 행사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 재판단계에서는 집행관을 통해 혐의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환장을 직접 송달함으로써 사건을 형사법원에 접수시킬 수 있으며, 공판이 개시된 사건에 참가하여 피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공판과정 중에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 피해자 보호관련 정부·민간기구

중앙정부기구로서 ‘피해자 권리담당 국무상’ 과 ‘피해자지원 중앙위원회’가 있다. 피해자 권리담당 국무상은 2004년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차원에서 법무부장관 보좌기구로 신설되었으며 7명의 직원이 보좌하고, 피해자 지원 관련 정부의 기본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¹³³⁾ 피해자지원 중앙위원회는 법무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위원회로

132) 박강우, 프랑스에서의 피해자학 연구 동향, p.75

서 내무(경찰), 재경, 사회, 보건, 교육 등 15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며 산하에 11명으로 구성된 상설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지원 관련 정부정책의 집행 및 관계부처, 참여 민간기구 간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에는 ‘범죄예방위원회’가 도단위로 구성되는데, 동 위원회는 도지사, 검사장 및 도의회 의장 등 3인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경찰 및 민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중앙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 시행 및 지방정부의 시책 조정, 참여 민간기구와의 피해자지원 협의 등을 행한다. 그밖에 총리 산하 ‘아동학대 및 성범죄예방 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아동학대 예방 관계부처 상설대책 그룹’이 있는데 내무(경찰), 법무, 교육, 청소년 등 관계부처간 실무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중앙 및 지방단위의 정책을 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구와의 협조를 도모한다. 또한,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각 도 중앙정부 부처 대표자(경찰, 법무, 사회 등), 민간 참여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여성 폭력예방 도 위원회’는 대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예방 캠페인 활동, 피해여성 보호시설 관리 및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협의 등을 행한다.

이외에도 1980년대 초부터 활동중인 민간단체들이 법무부의 지원으로 1986년 공식협회인 ‘국립 피해자지원 및 조정협회’를 결성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약 1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650여개의 피해자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였으며, 범죄피해 청취 및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물질적 지원 및 동행, 위급시 피난처 제공, 변호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경찰, 법무, 교육, 청소년 등 관계기관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은행, 병원, 보험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계획에 의

133) 검사 3, 대국회담당, 언론담당, 민간인 전문가 등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입법활동, 관련 민간기구와의 협력, 기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거 피해자 응대 요령, 피해자와의 대화 및 청취 요령, 미성년 성학대 피해자 처리요령, 피해자 국가보상제 등 총 47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¹³⁴⁾

3.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피해자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참여기구간 유기적 협조로 이루어지며, 법무부가 주관을 하고 경찰 등 관련부처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을 통해 직접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단체의 지원을 받아 간접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피해자 보호단체는 신고자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무료로 전개한다. 경찰은 형사국의 지방분국별로 총 127명의 피해자 지원전담 경찰관이 근무하는데 전국적으로 24개도 36개 경찰서에 ‘피해자 지원협회’의 상주 사무실을 운용중에 있고, 상주사무실을 두지 않는 경우는 피해자 지원협회 파견 연락관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피해자 민원 신고제, 민원 접수 피해자 전담경찰관제 시행(2002.5 시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일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민원 접수를 위한 별도의 전문경찰관을 배치하고, 별도의 조사실에서 진술청취가 이루어지며,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필요시에 은신처 제공, 심리안정을 위한 조언, 경찰서 및 병원 동행 등 민간 지원단체와 함께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998년 6월부터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미성년자의 반복적인 재판정 출두, 진술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및 정신적 충격완화를 위해 15

134)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동향, pp.41-43.

세 미만의 강간, 성폭력, 성노출, 성매수, 아동포르노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실시하며, 별도의 녹화실을 운영하고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하에 의무적으로 녹화하고, 증인으로 피해자 지원협회 등 제 3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¹³⁵⁾

제4절 일 본

1. 연혁 및 관련법률¹³⁶⁾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민간차원에서부터 출발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먼저 조직화가 되고 그 활동이 점차 민간조직과 연계, 확대되어 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일본 경찰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제를 강구한 바 있는데 특히,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가 기꺼이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귀결되므로 이 문제에 대한 경찰 조직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경찰의 기본입장이다.

일본은 1974년의 미쓰비시중공업빌딩 폭파사건¹³⁷⁾을 계기로 국회, 매스컴, 유족, 학자, 변호사협회 등에서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피해자 보상에 대한 여론

135)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동향, p.43.

136) 앞의 책, pp.15.

137) 1974.8.30 '동아시아 반일무장진전' 이란 좌익단체가 동경 마루노우치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빌딩에 시한폭탄을 설치, 폭파한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370명이 부상하였다.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80년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이 제정되고, 1990년 일본 피해자학회 설립을 통해 피해자 대책의 대강을 준비해 오던 중 1996년 일본 경찰청에서 ‘피해자 대책 요강’을 마련하여 전국 경찰에 시달하고 같은 해 경찰청 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설치하는 한편, 성범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여성경찰관을 배치하고 피해자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해주는 피해자 연락제도도 실시함으로써 경찰주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체제가 공식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8년에는 전국 피해자지원 네트워크¹³⁸⁾가 결성되어 여러 조직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민간조직 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현코자 하였고, 2001년에는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의 개정법률¹³⁹⁾이 시행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범죄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경찰본부장의 범죄피해자등에 대한 원조의 실시에 관한 지침 및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에 관한 규칙이 시행 되었으며, 2003.10.3에는 전국피해자네트워크에서 10월 3일을 ‘범죄피해자 지원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가. 범죄피해자보호이법(犯罪被害者保護二法)

2000.5.19 일본은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 즉,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

138) 민간 피해자지원조직의 연합체로서 1995년 개설된 미토(水戸) 피해자구소센터, 오사카(大阪) YWCA 피해자상담실 등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39) 주요내용으로 중상병 급부금 신설, 사망진 요양비 유족급부금에 포함, 장해급부금 대상 확대, 경찰본부장 등이 정보제공, 조언, 직원과견 기타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를 지정하는 제도 신설 등이 있다.

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74호, 이하 형소법등 개정법)’ 과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속하는 조치에 관한법률(2000년 법률 제75호, 이하 범죄피해자보호법)’ 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더욱 확충하였는데 이 두 가지 법을 범죄피해자보호이법 이라고 한다. 이로써 일본에서도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성과는 피해자보호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일본 학계와 실무계 특히 경찰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⁰⁾

1)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증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로 연소자 및 성범죄피해자 등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신문 받는 경우 불안,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심리상담사 및 부모 등의 적당한 자를 증인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형소법 제157조의 2),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피고인 및 방청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경우 정신적 압박감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방청인과의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차폐조치를 강구토록 하며(동법 제157조의 3), 성범죄 및 아동 관련 범죄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시 정신적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외의 별도 장소에서 TV모니터를 통해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7조의 4) 또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및 범인과 특별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6개월)에 고소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을 철폐하고(동법 제235조 제1항), 피해자에게 공판에서 의견 공술의 기회를 주어 주체적으로 재판절차에 관여케 함으로 인해 피해감정의 완화를 도모함은 물론 피고인도

140) 김용세, 일본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pp.45.

반성을 촉구하여 그 갱생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제도를 신설하고(동법 제292조의 2), 검찰관이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피해자 및 고소, 고발 등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은 심사신청권자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를 개정하여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 피해자 유족에게도 심사청구권을 인정하였다.

2)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속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피해자 등으로부터 방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판소의 재판장에게 방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상의 의무로서 규정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피해회복에 이바지 하기 위해 형사절차에 부속하는 조치로서 일정요건 하에 공판계속중이라도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인정하며(동법 제3조), 민사상 분쟁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소에 대하여 공동으로 화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의가 형사재판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되어 공판조서에 의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묻지마 살인’ 등 고의의 범죄행위로 불의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 또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해 사회의 연대 공조정신에 따라 국가가 급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1981년 ‘범죄피해자급부금지급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후 1995년의 지하철 사린사건과 같은 무차별 살상사건의 재발을 계기로 2001년 급부금 지급대상의 확대 및 급부 기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의하면 급부금의 지급은 3종류로 나뉘는

데 첫째, 중상병(重傷病)급부금은 가료 1개월 이상, 14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피해자가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둘째, 장애(障害)급부금은 1-14급 장애를 입은 경우 18만엔-1,900만엔을 지급하며, 셋째, 유족(遺族)급부금은 사망 전 피해자가 부담한 요양비를 포함하여 유족에게 320만엔-1,573만엔을 지급한다. 이러한 급부금은 도도부현 경찰본부 피해자 대책실 또는 경찰서 경무과의 접수를 통해 공안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피해자의 연령과 근로수입을 토대로 급부금이 산정된다. 범인불명 등의 경우 일정액 한도 내에서 가급부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한편, 2002년 일본에서는 일부 언론기관에서의 피해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잉취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인권옹호추진심의회 제안에 의해 ‘인권옹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정부기관에 의한 보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언론기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¹⁴¹⁾

2. 경찰의 분야별 피해자 대책

가. 성범죄 수사 및 피해자 지원체제의 정비

1962년 제정된 피해자대책요강에 의해 성범죄 피해의 잠재화의 방지 및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의 경감을 통해 성범죄 수사의 적정하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1966년부터 모든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형사부 수사 제1과 및 방면본부 수사과에 경시 또는 경부의 지도관을 두고 있다. 또한, 각 지도관 아래 성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성범죄 수사지도계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계에는 수사 및 피해자 심리에 정통한 여성경찰관이 1

141)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동향, pp.19.

명이상 배치되어 있다.

성범죄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여경의 경우 2002년의 경우 3,900명으로 전체 여경 9,390명의 1/3에 이르고, 가능한 지역, 시간대 등에 관계 없이 피해자측이 사정청취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을 위해 여경의 형사분야 진출과 경찰서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간사건 등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요원과는 별도로 ‘지정피해자 지원요원’¹⁴²⁾을 피해자에게 배치하여 피해자의 각종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의 사정청취 등의 수사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형사절차, 범죄피해 급부제도,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담당경찰관의 성명, 전화번호 등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 경찰에 살인의 피해자 유족용, 성범죄 피해자용, 기타 신체에 관한 범죄의 피해자용, 교통사고 피해자용 등 유형별 안내책자를 작성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 신고시에 피해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부 현에서는 외국인 피해자용으로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 번역본도 비치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차 범인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 범인이 검거되었는지, 그 신병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례인 바,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하여 신체에 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체포, 기소 등의 수사상황 및 피의자 처분상황 등의 통지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각 경찰서 형사과

142) 2001년 현재 전국 약 2만명(이중 여성 3천명)이 지정피해자 지원요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1년 약 26,700여건의 사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에 피해자 연락담당계를 설치하여 피해자로부터의 문의 등에 대응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재피해 방지

1997년 공갈 등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범인으로부터 보복살해 되거나 살해될 뻔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9월 ‘재피해방지사건 등록요령’을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파악과 필요한 예방 및 경계활동을 행하고, 가능한 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1년에는 법무 검찰당국에서 범인의 교도소로부터의 출소정보를 피해자로부터의 요망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자 및 경찰에 통지하는 ‘수형자의 석방 등에 관한 정보의 통지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 형사국에서는 ‘재피해 방지요령’을 제정하여 재피해 방지조치의 강화와 대상 피해자 범위의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재피해 우려를 강하게 느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방법벨’ 등의 방법기기를 대여하거나, 피해자 집에 ‘자동긴급통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라. 이차적 피해 방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증거채취시의 피해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정확한 증거수집을 행하기 위해 ‘성범죄수사 채증키트’를 개발, 1997.3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필요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의복 및 속옷, 샌들 등도 국가 부담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비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찰 및 검사에 여의사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여의사 확보를 위해 경찰과 전국 산부인과의사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써 이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 전용의 ‘진술청취실’을 설치하고, 경찰관서에 출두하여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이용할 목적의 ‘피해자 전용차량’을 국비로 구입하여 전국에 251대를 배치하였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경찰관서 등에서의 진술을 위해 출석하는 경우 그 여비, 경찰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비용 등을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마. 피해신고 촉진

전국경찰에 성범죄 피해자전용 상담전화 ‘110번’이 설치되어 성범죄 수사에 정통한 여경 및 상담자격을 가진 여성직원이 대응토록 하고, 성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상담실도 경찰본부에 설치하고 1명 이상의 여경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여경 등이 학교, 병원, 여성단체의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성범죄의 현상 및 경초팔의 대처상황, 호신술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신문, TV 등의 매스컴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 피해자의 치료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해 장기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곤란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담사를 채용하여 단기간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¹⁴³⁾ 또한, 경찰수사시 경찰관에 의한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

143) 2004년 현재 일본 전역에 225명의 전문상담원(임상심리사 자격자 등)이 활동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가 경찰의 위촉을 받아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에게도 상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해 정신과 의사 등을 경찰 상담업무 어드바이저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타기관·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일본의 피해자 지원체제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서부터 조직화되었으며, 그 후 민간조직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던 상황에서 일본 경찰청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지원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쉬우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형사사법기관,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복지관계 기관, 의료관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피해자지원 연락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중이고,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서와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가 2,000여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 등 경찰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민간의 피해자 지원단체 설립시 적극적인 지원을 행함은 물론 그 운영에 있어서도 피해자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접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¹⁴⁴⁾

144)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공안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등 조 기원조단체’를 지정할 수 있어, 민간단체가 경찰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아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경찰의 구체적 피해자 보호 사례¹⁴⁵⁾

가. 피해자 정보제공

- 1) 침입절도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방법상 유의사항을 기재한 재피해 방지카드 배포(미에)
- 2) 검시·부검의 필요성 및 매장절차 등을 기재한 팜플렛을 작성, 교부(토야마)
- 3) 살인사건의 유족에게 사건개요 설명, 향후 수사방향, 부검 등의 필요성 및 범죄피해 급부금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오사카)

나. 상담체제 정비

- 1) 피해자 상담기술 교육과정 운영(관동관구경찰학교)
- 2) 경찰관 1명을 관내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시켜 피해자대책에 대해 연구, 임상심리사 자격자로 양성(이와테)
- 3) 임상심리사 자격 경찰관 2명을 범죄피해자대책실에 배치(아키타)
- 4) 고도의 상담기술 전문가 보유 법인에 카운슬링 업무 위탁(시즈오카)

다.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부담 경감

- 1)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된 강간사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인심문시 동행(교토)
- 2) 청각장애인 유족을 위해 수화가 가능한 직원을 ‘피해자 지원요원’

145)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동향, pp.29-30.

으로 지정하여 애로사항 청취, 피해급부제도 설명, 공판시 동행 등 지원(아이치)

3) 피해자의 진단서 발부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단체 비용으로 지원(도쿄, 아이치)

라.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재피해 방지

1) 출소가 임박한 복역수가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언동을 함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자동감시통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경계체제를 확립하는 등 안전확보 추진(돗토리)

2) 재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 및 가족에게 휴대전화를 일시대여하여 비상연락체제 확립(에히메)

3) 약취 및 상해사건의 범인이 석방됨에 따라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면접 및 전화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주거지 주변을 중점 경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이와테)

마.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1) 경찰본부가 지자체 의회 및 관계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피해자 대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미야기)

2) 살인사건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자치단체, 아동상담소 및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홋카이도)

3)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 가맹하고 있는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는 총 35개 단체가 있으며 경찰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2004년)

4.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의 역할 증대

범죄피해자가 받는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원내용도 다양하므로 피해자 지원을 국가기관에서 전부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원활동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원조단체에 의한 지원활동이 필수 불가결하다. 일본의 경우 2004년 현재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는 35개 단체에 이르며 경찰은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순수 민간지원단체는 아니지만 검찰청, 변호사회, 임상심리사회 등의 기관이 회원으로 된 ‘피해자지원 연합협의회’가 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어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조직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활동하고 있다.

이들 민간에 의한 피해자 지원활동은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면접상담을 병행하는데 전화상담은 최초의 상담창구로서 피해에 대한 정보를 청취함과 피해자의 요구에 상응한 정보, 조건의 제공, 이용 적절한 시설, 전문가 등에의 소개를 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계속적 전화상담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을 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면접상담은 목적에 따라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면접, 피해자의 위기적 상황극복 지원을 위한 비교적 단기간의 면접 및 장기적인 심리요법 등이 있다. 한편, 민간 피해자지원 조직은 활동 주체가 자원봉사자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전화상담 및 면접 등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사건직후의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나, 향후 민간 지원 활동의 중점이 이러한 조기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전환되리라고 예상된다.

제4장 피해자보호제도의 한국적 발전방향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지난 30여년간 가장 주목할 만한 형사정책적 변화의 하나로 ‘피해자의 재발견(Wiederfinden von Opfern)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자의(Willkür)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였으며 심지어 형사정책 목적달성에 장애요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원에서 재부각되고 선진 각국의 입법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1982년 미국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1986년 독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 1983년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호강화법’, 2000년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이법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과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속하는 조치에 관한법률’ 등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피해자가 세계 각국 형사정책의 전면에 부각된 배경을 살펴본다면 종래 범죄통계는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드러난 범죄에 한정되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상당부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관여하게 되면서 입게 되는 소위 제2차 피해(sekundäre Viktimisierung)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원조를 위하여 형사절차를 전면적으로 변형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현재의 범죄자 일원주의적 경향을 피해자·사회·가해

자의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현재 29개주 헌법에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권, 공평과 존중과 관심으로 치우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3년, 1996년, 1998년 전국적인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범죄 신고율 변화를 분석한 바, 이에 따르면 점차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20%대에 불과해 영국의 58.7%, 프랑스의 60.8%, 독일의 4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¹⁴⁶⁾ 이처럼 우리나라의 범죄신고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건된 범죄자 수보다 6배 이상 많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국가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제2절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 입법상황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피할 수 있다는 오늘날의 분위기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많은 제도와 규정을 만들고 다듬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헌법상의 규정(제27조 제5항,

146)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2002, 독일의 경우에도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은 18.9%에 불과하다.

제30조)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고,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 한다)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특례법’ 이라 한다) 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꾸준한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초석을 다졌고, 2005년에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이 제정되어 피해자보호·지원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2004년 8월 17일 경찰청훈령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을 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을 작성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제도와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단계는 수사기관 즉, 경찰이다. 따라서 범죄 수사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는 협조와 갈등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기관은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를 통해서 중요한 수사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면 그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잊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¹⁴⁷⁾

그동안 우리나라의 피해자관련 입법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정(1981) 배상명령제도 도입
- ②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1987)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금 지급

147)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pp.1.

- ③ 형사소송법 개정(1987) 피해자진술권 도입
- ④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1990) 피해자 및 증인 보호 신설
- 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994) 수사와 재판절차상 피해자보호
- 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2003)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내용의 녹화, 증거능력 부여 신설
- ⑦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2005) 피해자 참여권의 확대, 2차 피해자화 예방 및 피해원상회복의 가능성 증대

위와 같은 입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가의 수준에 비추어보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는 고소인, 참고인, 증인, 배상신청인이 되는 것 외에 형사절차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하거나 일반적으로 그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범죄자가 입건되었는지, 체포되었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소추되었는지, 석방되었는지, 공판절차가 개시되었는지, 공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등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의 소추결정에 대하여 한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형사공판에서의 역할도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주요부분의 피해자보호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피해자보호 대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가. 범죄피해자보호법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기본 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¹⁴⁸⁾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직접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서의 범죄피해자 개념은 범죄피해자구조법 등 개별법에서의 개념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이 개별법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의 이념과 대책을 이어받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개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⁹⁾ 즉 기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책에 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나 급부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이나 하위 규정에서 현실적인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범죄피해자의 침해의 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상담, 의료의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및 취업 관련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피해회복 즉, 원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의 형사절차상 권리 행사를 비롯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

148) 법제정 과정에서 피해자 통지제도의 확대, 피해자 진술권의 확대, 피해회복의 임의적 감경 사유화의 여부 등을 놓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

149)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한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특례법에서의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제7조, 제8조 참조).

나. 범죄피해자보호규칙

한편 경찰청은 2004년 8월 17일 경찰청훈령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이하 ‘보호규칙’ 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장은 총칙편으로 보호규칙의 목적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 피해자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하여, 제3장은 구체적인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규칙에서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이라 규정하고 있고(제2조 2호), 여기에서의 피해자대책이라 함은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 보호 및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적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호).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피해자보호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제3조).

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축

범죄피해자보호입법에 따라 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 지원단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제17조), 2004년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전담검사 및 담당관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

고, 경찰도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또는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은 실정법의 한계가 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 사이에는 해소할 수 없는 정서적인 간극이 존재한다. 즉 범죄피해자의 경우 국가작용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또는 기타의 국가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꺼리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로 인하여 오히려 실망과 분모를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민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¹⁵⁰⁾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법인(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제17조).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피해자지원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이 후원하여 전국 검찰청별로 센터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범죄예방지역협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¹⁵¹⁾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¹⁵²⁾

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150)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피해자지원센터는 김천·구미의 피해자지원센터를 꼽는다. 2003년 9월 설립되었으며, 의료·법률·상담 전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재정은 김천시와 구미시의 보조금, 범죄예방지역협의회의 후원금 및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151) 조균석, 범죄피해자지원개론, 피해자지원센터, 2005, pp.65-66.(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pp.5. 재인용)

152) 범죄피해자보호규칙(2004.8.17, 경찰청훈령 제428호)/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 pp.6-7.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는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98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도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비밀엄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10조도 “수사를 할 때에는 항상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에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뚜렷한 명문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각종 수사지침서에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주변인물을 괴롭히거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는 ‘제2차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경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규칙 제3조).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일부 추가

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가장 두드러진 규정이 있다면 바로 재정신청제도를 확충한 개정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을 들 수 있다.¹⁵³⁾ 즉,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확장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통제가 강화되면 경찰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사법판단을 받게되기 때문에 고소사건 처리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수사절차에 있어 피해자보호 정신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규정들은 이외에도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여부를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을 시키는 것,¹⁵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¹⁵⁵⁾ 등을 들 수 있다.¹⁵⁶⁾

나. 피해자보호대책의 내용 및 발전방향

153)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54)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55)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156) 김재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방향, 치안정책리뷰, 2008, pp.2.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권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의 진행에 관한 설명과 피해자의 구제 또는 불안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제11조).

범죄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그 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전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적시에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인격권의 보호와 일정한 절차의 참여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초로 정보권 보장이 요구된다. 피해자에 있어서 정보제공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을 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정보의 획득은 피해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며, 아울러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의 요구권은 정보제공이라는 국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정보제공의 희망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까닭에서 정보제공 요구권은 사회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재피해의 방지를 꾀할 수 있다. 범죄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

고 또한 그 정보제공을 기초로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 범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원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예컨대 스토키(Stalker)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의 성질상 범행반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측의 정보, 특히 그 신병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가 얻을 수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는 그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을 꾀할 수 있다. 범죄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회복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것은 명백하며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형사절차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소송의 주체인 검사나 피고인 또는 법관 등에게 인정되는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당사자인 범죄사건이 적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를 법적 권리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가이다. 법적 근거가 없이 구체적 청구권으로서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일반 정보와는 달리 사건에 관한 개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 내지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외 조화를 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권리 내지 이익으로서의 가해자나 사건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보호, 적절하고 원활한 수사와 공판의 유지, 가해자의 교화·개선

과 사회복귀의 촉진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정보제공을 인정할 것인지는 이들 요소와 피해자측의 정보획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대립하는 이익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절차참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기본적인 진행 과정과 내용을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지우는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⁵⁷⁾

2) 제2차 피해의 방지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조사에 어울리는 장소 이용, 그 외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불안 또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다(제12조). 이에 따라 피해자를 고려한 시설의 이용은 경찰서 등에 설치된 피해자조사실을 이용하거나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범죄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객관적 경과 및 상황의 파악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어 제2차 피

157) 예컨대 일본 경찰은 1997년 ‘피해자대책요강’을 근거로 ‘경시청피해자연락실시요령’을 제정하여 ‘피해자연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연락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살인·성범죄·전치 1개월 이상의 상해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내용은 수사의 진행상황, 범인의 성명, 기소·불기소처분의 결과, 기소된 법원 등이다. 또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살인·성범죄·전치 1개월 이상의 상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신고수리 후 약 2개월, 뺑소니 등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약 2주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진다. 한편 일본의 검찰청에서는 1999년 4월부터 피해자나 그 친족에게 처분결과 등을 알려주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경찰의 피해자연락제도와 같은 범죄 종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지하는 내용도 기소의 경우 사실의 요지, 불기소의 경우 주문·이유외의 골자 등과 같은 수사단계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판기일, 재판의 결과, 상소의 유무와 같은 공소제기후의 정보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속·보석 등의 피의자·피고인의 신병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그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 요청된다.

수사단계에서 제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하여 조사장소·시기·시간·회수 등의 조사방법을 연구하거나 조사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할 것이 요청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제2차 피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찾은 조사 및 소환’, ‘수사관의 중복질문, 부적절한 질문, 필요이상의 지나친 조사’ 등의 경찰수사가 피해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중복을 피하는 조사, 불필요한 것을 질문하지 않는 조사가 조사담당자에게 기대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¹⁵⁸⁾.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서도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형사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권까지 인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과 변호사의 참석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¹⁵⁹⁾ 우리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158)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 p.9. 재인용)

159)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f [소송절차에서의 변호사의 대리] ①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

와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토록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입법이 아닐 수 없다(형소법 제163조의2)

3) 재피해 방지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강구 역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가해자의 보복으로 인한 재피해의 방지는 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근거로 재피해 가능성 유무에 관한 종합 심사를 통해 재피해 방지조치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 ‘재피해방지 대상사건’ 이라고 등록하고, 경찰관의 피해자 신변 경계와 주거지 주변의 경계 강화, 긴급통보장치의 설치,¹⁶⁰⁾ 방범도구 등의 대여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일반적 피해자대책의 발전방향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 현실과 일반적인 피해자 대책 가운데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내용을 살펴본 후 피해자 보호방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이나 검사의 피해자 신문시 변호사의 참석을 허용한다.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171조b에 의한 공개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신이 신뢰하는 1인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신문을 행한 자가 이에 관하여 재판하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160) 미국 일부 주에서 운영중에 있는 위험신호버튼(Panic Button)은 가정폭력 내지 재피해·보복 범죄의 특별한 위험에 처한 여성 등 피해자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은 단추모양의 장치로서 전화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에게 연락이 가능하고, 신고 메시지는 즉각적인 대응 우선권을 가진다.(경찰청,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p.15.)

따른 법적지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관코자 한다.

먼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격존중 규정 및 조사최소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역시 동법에 의한 피해자분리신문 및 비디오중계 허용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규정인 만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비디오중계에 의한 분리신문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대두 되었던 바, 개정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였다.

그밖에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형사소송법) 및 재판공개원칙의 제한(성폭력특별법 및 법원조직법) 역시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변호사보좌인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그들을 통해서 대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단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해자-피해자-화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에 관련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행 법률규정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위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형법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며,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는 특별법의 내용을 가급적 형사소송법으로 흡수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전환이 없이 법적 제도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보호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아동범죄·조직범죄의 경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다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1. 적극적 지위보장 방안 - 능동적 정보·참여권

우선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은 적시에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피해자의 정보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록열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의 부당한 공격 내지 책임전가식 변호에 대해 스스로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위함이다. 다만, 피고인의 기록열람권, 프라이버시, 방어권,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이익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열람권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1987년 모든 피해자에 대한 기록열람권을 허용하였으며(형소법 제406조의e), 변호사를 통해서만 기록열람이 가능하다(피고인과 동일). 우리 현행법상 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록열람권 신설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재정신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중인 서류에 대하여도 열람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공판절차 출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피해자가 얼마든지 공판을 방청할 수 있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출석권을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환장을 보내고, 공판정에서도 소송당사자 지위에 준하는 좌석배치가 필요하다.

독일법상의 부대공소(Nebenklage) 역시 고려될 만하다. 부대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절차에 피해자가 부대적으로,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공판절차참여를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

게 보장하는 제도이다. 살인죄·살인미수죄·상해죄·성범죄·약취죄 등의 경우 피해자 또는 사망한 자의 직계친족 등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참가의 시기는 언제나 가능하다. 판결 후에도 상소제기 목적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부대공소인은 검사와 동일한 권한 즉, 기피신청권·질문권·질문허용에 대한 이의신청권·증거신청권·의견진술권·독자적인 상소권을 갖는다. 현재 독일에서는 매년 5-12% 정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대공소로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인정은 피고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 즉, 피고인이 2명의 적과 싸우는 형국이 되고, 피해자가 검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실체진실 발견에도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대공소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해자에게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거나, 신문참여권, 질문허용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원상회복은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의는 실무상 수사개시 단계부터 양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효과가 인정되어 왔지만 실체 형법이나 절차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합의를 위한 지나친 집착이 새로운 범죄를 불러오기도 하고,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우위인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를 죄책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지기도 하고,¹⁶¹⁾ 반대로 조직폭력 범죄와 같이 가해자가 우위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161) 과실범이나 상습성이 없는 우연한 범죄의 경우 빈번히 나타난다.

이런 우리의 현실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제도화시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민사적 화해만으로 절차를 종결시킨다면 돈 많은 범죄자만을 보호하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정립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상회복을 형사절차와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 볼 때, 첫째, 형벌과는 다른 하나의 제재로서 형법에 규정하는 방법(독일형법 제46조a, 양형참작사유로 규정하는 방법 포함), 둘째, 형사절차를 종결 또는 중단시키는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법(독일 소년형법상의 다이버전)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독일 형사소송법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처분(형소법 제153조의a)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상 화해제도(TOA)'를 도입하고 있는데, 검사가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3월 내지 6월의 기간내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소중지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시에는 반드시 불기소하여야 한다. 경미사건의 신속한 종결이 목적이며, 독일 전체 불기소사건의 1%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검사와 법원은 형사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화해를 시도하여야 하며(형소법 제155조a), 검사와 법원은 직권으로 제3의 화해조정기관에 화해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기관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형소법 제155조의b). 원상회복을 위한 벌금형의 집행 납입유예,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형소법 제459조a).

'형사실체법상의 화해제도'로서 독일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조건으로 보거나 그 자체를 독립한 제재로서 기능토록 하고 있으며(형법 제46조a, 각주 7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과하는 조건으로서 피해변상을 명할 수 있고, 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형법 제56조b). 현재 검찰, 행정관청, 민간기관, 법원 등의 협조로 제

3의 조정기관이 화해를 주선하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 소극적 지위보장 방안 - 수동적 보호조치

신문방식에 있어서 '인격권 존중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보다 실제진실 발견에 치중하여 성범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피해자의 내면의 개인적 영역을 침해한 범죄일수록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규정은 단지 개별 특별법에 의해 규정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원칙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신문시 신뢰할 만한 자 또는 변호인의 동석 또한 확대검토되어야 한다. 독일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그의 신뢰를 받는 자의 동석여부를 신문자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형소법 제406조f 제3항). 우리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 규정이 있고, 개정 형소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범위를 확대하였다. 변호인 참석권의 경우 독일은 모든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피해자 신문시 변호사의 참석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소법 제406조f 제1항, 제2항). 우리나라 형소법에의 도입여부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반복신문의 회피 및 범죄자와의 대면회피를 위한 비디오 증언 녹화 및 신문의 비디오 중계 역시 확대검토되어야 하는데, 성폭력특별법상의 제 규정들이 개정 형소법에 어느정도 반영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 피해자는 아니나 공적인 자격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증인¹⁶²⁾

162) 수사담당 경찰관 내지 검찰 수사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개정 형소법에 새로이 도입된 조사자 증언제도의 시행과 함께 독일 입법례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 경우 신문시 주소 대신에 직장주소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의 입법례(형소법 제68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¹⁶³⁾

제4절 한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와 발전방향

경찰청은 그동안 인권경찰상 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¹⁶⁴⁾, 피해자서포터¹⁶⁵⁾·피해자보호관¹⁶⁶⁾·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¹⁶⁷⁾ 등을 배치하는 등 피해자 존중의 경찰활동 추진을 위한 유·무형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범인 검거 및 수사위주의 경찰활동이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¹⁶⁸⁾ 아직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의식이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63) 독일 형사소송법 제68조 [증인신문] ① 증인의 성명, 나이, 신분 또는 직업 및 주소를 묻는 것으로 신문이 시작된다. 증인이 공직에 있을 경우 주소 대신 근무지를 진술할 수 있다.

164) 기존 경찰청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총경을 책임자로 하는 인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2005.2.22)

165) 1인 수사사건은 사건담당자가, 1개팀 이상 전종사건은 지정된 서포터가 활동한다.

166)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된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은 강력사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상담·지원단체를 연계하고, 팀단위 사건의 경우 최초 현장출동자 등 사건별 책임자를 피해자서포터로 지정하고, 지정된 피해자서포터가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는 등 피해자서포터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167)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심리학 전공자를 경찰로 특별채용하여 피해자 심리치료 및 지원활동을 하는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CARE팀)’ 제도를 도입(2007.4)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68) 서울 동작경찰서는 2006년 5월부터 피해자지원협의회를 발전시켜 (주)농심, (주)유한양행, 대방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Click! 희망심기’라는 명칭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자지원협의회는 2005년 전국 233개 경찰서에 구성되어 상담·의료·법률 등 분야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를 민간과 연계한 협의체로 확대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생계비·학자금·의료비·직업훈련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현장 복구지원, 화해·중재 지원, 수사기관 동행 등 사법보좌 지원, 가족간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범죄피해자 캠페인 등 종합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먼저, 피해자의 경찰관서 출석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한번으로 피해자조사를 끝내는 One-Stop 조사제¹⁶⁹⁾가 보다 확고히 정착되어야 하겠다.

피해자의 피해품 회수를 위해서 여죄 및 장물수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수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절도범에 대한 여죄수사 및 장물수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수범범죄에 장물범을 추가하고 피해품 이동경로에 따른 장물수사를 강화함으로써 피해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의 피해회복 강화를 위한 ‘e-피해품 관리사이트’ 개설도 실효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해 범죄현장에서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위기개입팀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 Care Team의 1년 6개월여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¹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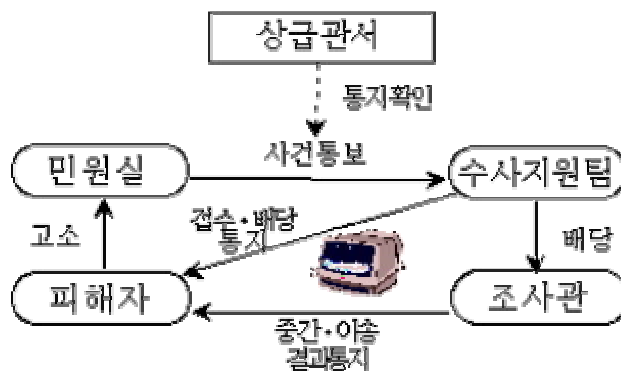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도 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와 연계하여, 사건 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수사결과 등 단계별로 문자메시지(SMS)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¹⁷¹⁾ 경찰서 수사지원팀 또는 상급관서에서 각

169) One-Stop 조사제란 범죄현장에 형사·과학수사반·지구대가 함께 출동하여 감식·피해조사 등을 한 번에 마치고, 피해조사서도 “체크리스트형”을 도입하여 조사시간을 단축하며, 피해자 편의제공을 위한 “이동식 피해조사실”을 확대 보급 활용코자 하는 제도이다.

170)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위기개입·지원·대응팀 :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 채용한 심리학 학위 및 임상경험자로 지방청 강력계에 배치되어있다. 강력사건 등 발생시 초기 현장 출동하여 위기개입으로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심리평가, 상담 및 피해자 지원단체 연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사관별 통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¹⁷²⁾ 이미 상당부분 피해자를 우선하는 통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성 검증 후 철저한 환류절차를 거쳐 보완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지관리 시스템 체계도】



2. 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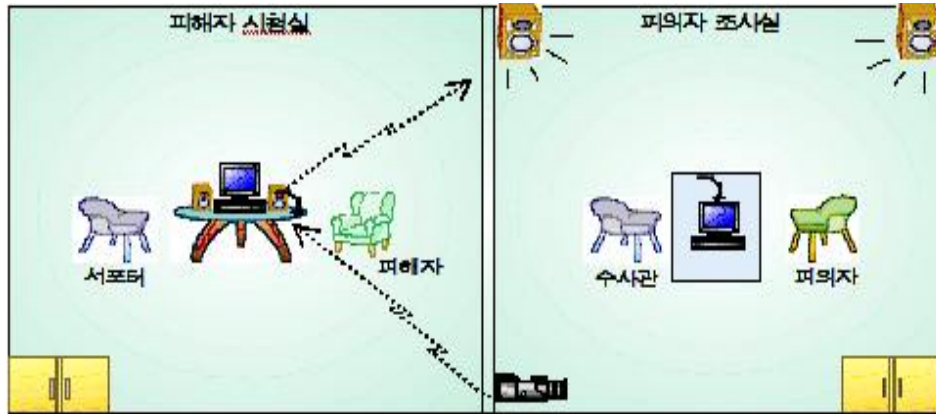
화상대질조사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및 가해자의 보복 위협의 우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¹⁷³⁾

171) 2006년부터 CIMS를 활용하여 사건접수, 수사결과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SMS)로 통지하는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172)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로 통지한 경우, CIMS에서 통지기록을 보관하므로 사건관련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73)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진술녹화실을 이용하여 두개의 조사실을 분리 설치하고, 줌카메라, 영상·음향장치, 조명조절장치 등을 추가하여 화상대질조사실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화상 대질조사 운영체계】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신변보호의 기준과 단계별 세부절차를 규정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폰 ‘SOS 서비스’ 또는 GPS장비 대여 등 신변보호 대상자와 Hot-Line 구축을 통해 위급상황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경찰청에서 제작한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의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매뉴얼을 작성, 관리해 나감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된 일선서 형사·수사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철저히 예방·감독하도록 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보호 실태를 평가하여, 피해자권리 침해 경찰관에 대하여는 엄정한 징계와 특별교육을, 피해자보호에 앞장선 경찰관은 「피해

자지킴이」로 선발, 포상하는 등 자체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외부로부터의 감시·참여를 위해 민간·인권단체등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¹⁷⁴⁾ 경찰의 피해자 보호실태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5장 결 론

형사절차, 특히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그간 잊혀진 존재로 취급되어 온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대책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발적이긴 하지만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¹⁷⁵⁾ 1987년 헌법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 규정을 두게 된 것은 피해자보호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비롯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 하였는 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74) '시민인권보호단'은 인터넷을 통한 공모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별로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현재 148명이 활동중이다.

175) 우리의 경우 피해자 보호는 개별 특별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단편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꾀하여 오던 중 범죄피해자보호법(2005)과 형사소송법 개정(2007)을 통해 상당부분 체계화를 이루게 되었다.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같은 특별법들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도 성범죄 피해자와 그 증인보호를 위한 관련 특별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5년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증인신문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피해자 동의하의 영상녹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추가한 것은 진일보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형법적 측면의 고려와 개별 특별법의 내용을 가급적 형사소송법으로 흡수하여 제도화 하는 절차법적 측면의 검토가 기대된다.

우리 경찰의 경우 피해자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대책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통합적인 피해자보호지침을 기초로 피해자 보호 매뉴얼 제작·배포, 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제도 운영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화해·조정제도의 부재로 수사경찰이 형사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담을 안고 있으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에 미흡한 점이 있고, 피해자 수사를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미진한 수사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 발전방안을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제도적으로 독일의 부대소송(Nebenklage) 내지 각국의 화해·조정 제도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경찰단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품 회수활동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신변보호 프로그램 구비로

사건관계인의 신분노출 방지, 화상대질 조사실 확충 등 피해자 조사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타 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범사회적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단행본

1. 국내문헌

- 경찰청,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2006.
- _____,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동향, 2004.
-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치안연구소, 2002.
- _____, 일본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박강우, 프랑스에서의 피해자학 연구 동향, 피해자학연구(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 안영훈,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 강론, 치안연구소, 2000.
-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통권 제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2002.

2. 구미문헌

- Albrecht, Peter-Alexis, Kriminologie - Eine Grundlegung zum Strafrecht, 3. Auflage (2005)

- Bals, Nadine, Täter-Opfer-Ausgleich - Cui bono? - Befunde einer Befragung von Geschädigten und Beschuldigten, MschrKrim 2006, S. 131 ff.
- Bannenber, Britta / Uhlmann, Petra, Die Konzeption des Täter-Opfer-Ausgleichs in Wissenschaft und Kriminalpolitik,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1 ff. zit.: Bannenber/Uhlmann,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Beulke, Werner, Strafprozessrecht, 8. Auflage (2006)
- Brühl, Albrecht / Deichsel, Wolfgang / Nothacker, Gerhard, Strafrecht und Soziale Praxis, 2005
- Dölling, Dieter / Henninger, Susanne, Sonstige empirische Untersuchungen zum TOA,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203 ff., zit.: Dölling/Henninger,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Dölling, Dieter u. a., Rechtspolitischer Ausblick,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481 ff., zit.: Dölling u.a.,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Frehsee, Detlev, Wiedergutmachung und Täter-Opfer-Ausgleich im deutschen Strafrecht - Entwicklung, Möglichkeiten und Probleme, in: Bernd Schünemann / Markus Dirk Dubber (Hrsg.),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 Neue Entwicklungen in Deutschland und in den USA, 2000, S. 117 ff., zit.: Frehsee, in: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 Göppinger, Hans, Kriminologie, 5. Auflage (1997)

- Höynck, Theresia / Jesionek, Udo, Die Rolle des Opfers im Strafverfahren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nach den jüngsten opferbezogenen Reformen des Strafverfahrensrechts: Österreich als Modell?, MschrKrim 2006, S. 88 ff.
- Kaiser, Günther / Schöch, Heinz, Kriminologie, Jugendstrafrecht, Strafvollzug, 6. Auflage (2006)
- Kaiser, Michael, Die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 Implementation und Evaluation des 'Opferschutzgesetzes', 1992
- Kunz, Karl-Ludwig, Kriminologie, 4. Auflage (2004)
- Meier, Bernd-Dieter, Kriminologie, 2. Auflage (2005)
- Meyer-Goßner, Lutz, Strafprozessordnung, 49. Auflage (2006)
- Rössner, Dieter / Klaus, Thomas, Rechtsgrundlagen und Rechtspraxis,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49 ff., zit.: Rössner/Klaus,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 Schwind, Hans-Dieter, Kriminologie - eine praxisorientierte Einführung mit Beispielen, 16. Auflage (2006)

II. 논문

1. 국내문헌

-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4.
- _____,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방향, 치안정책리뷰 (제2호), 2008.
- 류병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박광섭,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8.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2004.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9.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2. 구미문헌

Böttcher, Reinhard, Das neue Opferschutzgesetz, JR 1987, S. 133 ff.

Diemer, Herbert, Der Einsatz der Videotechnik in der Hauptverhandlung, NJW 1999, S. 1667 ff.

Hilger, Hans, Über das Opferrechtsreformgesetz, GA 2004, S. 478 ff.

Kilchling, Michael, Opferschutz und der Strafanspruch des Staates - Ein Widerspruch?, NStZ 2002, S. 57 ff.

Meier, Bernd-Dieter, Täter-Opfer-Ausgleich und Wiedergutmachung im allgemeinen Strafrecht, JuS 1996, S. 436 ff.

Rieß, Peter, Zeugenschutz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NJW 1998, S. 3240 ff.

Rieß, Peter / Hilger, Hans, Das neue Strafverfahrensrecht - Opferschutzgesetz und 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87 -, NStZ 1987, S. 145 ff.

Rössner, Dieter, Gerechtigkeit für Gewaltopfer durch Kriminalstrafe?, Bewährungshilfe 1994, S. 18.

Seitz, Helmut, Das Zeugenschutzgesetz - ZSchG, JR 1998, S. 309 ff.

책임연구보고서 2008-16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연구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